

2012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

2011. 7



차 례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

I. 총 괄 / 7

제1장 사업개요	9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9
2. 사업 추진경과	11
3. 사업 추진근거	12
4. 사업 운영방향	12
5. 지침 주요 변경 전·후 비교표	15
제2장 2012년도 사업추진 계획	18
1. 목표와 추진방향	18
2. 지원대상	19
3. 지원내용	20
3.1 시설	20
3.2 보건의료장비	26
4. 사업추진	28
4.1 추진절차	28
4.2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29
4.3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31
4.4 지원대상 제외기준	35
4.5 사업착수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36
5. 추진체계 및 일정	37
5.1 추진체계	37
5.2 추진일정	38

II. 신청서 작성지침 / 41

제1장 시설 분야 신청서 작성지침	43
1. 사업목적	43
2. 지역현황	43
3. 설치장소	48
4. 사업선정	52
5.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62
6. 소요예산	64
7. 추진일정	65
제2장 보건의료장비 분야 신청서 작성지침	67
1. 시설현황	67
2. 사업선정 현황	68
3. 필요장비	70
4. 소요예산	74
5. 도시보건지소 표준의료장비 목록	76

III. 선정대상 사업추진 절차 / 81

제1장 시설 분야 사업추진 절차	83
1. 세부관리개요	83
2. 주요 일정별 업무내용	84
3. 사업절차	87
4. 사업절차 흐름도	89

제2장 보건의료장비 분야 사업추진 절차 90

1. 장비 구매 90
2. A/S 등 기타 사항 90
3.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91

제3장 사업 분야 추진 절차 92

1. 사업 변경 등 92
2. 사업 착수 보고 93
3. 사업 수행 실적 제출 93
4. 지연사유보고서 제출 93

IV. 부 록 / 94

제1장 건축설계 지침 96

1.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예시) 97
2.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 98
 - 2.1 건축계획의 목표 98
 - 2.2 일반설계지침 100
 - 2.3 면적계획 105
3. 보건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부문 108
 - 3.1 CI의 목적 108
 - 3.2 CI(Corporate Identity)의 구성 108

제2장 행정서식 110

1.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112
2. 시 도 평가결과서 123
3. 시설 심의 신청서식 124
4. 보건의료장비 관련 서식 144

제3장 도시보건지소사업 관련 연락처 145

제4장 지침서 및 설명회 자료등 다운로드방법 146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

I. 총 관

제 1 장 |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취약인구의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미충족**
 - * 65세 이상 노인의 66%(335만), 의료급여대상자의 72%(100만), 장애인의 48%(100만)이 도시에 거주
-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need)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
 - 도시지역에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거동불편, 외상 주민 등 보건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 목표에도 부합
- 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도시보건지소 설치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리적 접근권 보장**
 - 만성질환자, 회복기환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질병의 예방·관리 및 재활 서비스**, 경증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
 -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강화**
 - 직장, 학교,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 금연·영양·운동·절주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및 제공**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보건지소 이용자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운영**
- 보건교육장 등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장려**
-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등 업무위탁 및 만성질환자의 투약·진료는 민간의료기관, 사례관리·모니터링은 보건기관 담당을 통한 **협력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업 추진경과

-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05~'06년)
 - '05년 7개소, '06년 3개소 선정·운영을 통한 도시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충족
 - * 서울 노원구, 인천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대전 중구, 충남 천안시, 제주 제주시 (10개소)
- 도시보건지소 핵심사업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06년)
- 도시보건지소 정규사업 실시('07~)
 - '10년 12월말 현재, 3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

<표 1> 도시보건지소 지원기관 현황 (2007~2011년)

('10. 12월 현재, 개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도	'11년도
예산	3,214	7,650	4,887	4,096	2,779
신규 선정	6개소	14개소 ¹⁾	6개소	4개소	4개소
지원 개소수	시설 6개소 ³⁾ 장비 5개소	시설 11개소	시설 7개소 ²⁾ 장비 2개소	시설4개소 장비10개소	시설4개소 장비3개소
지원 내용	시설비, 장비비의 2/3 지원	시설비의 2/3 지원	시설비, 장비비의 2/3 지원		
비고	본사업				

¹⁾ 3개소 : 도시보건지소 정규전환만 신청, ²⁾ 2008년 정규전환지역 1개소 포함

³⁾ 2개소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설치·운영

3 사업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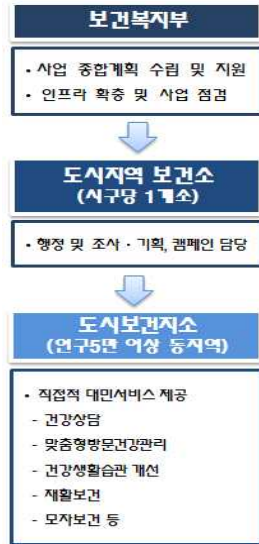
제19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4 사업운영방향

-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보건서비스 향상

-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기능 분화를 통한 **보건사업의 전문화·체계화**
 - 보건소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 행정업무 담당, **도시보건지소는 직접적인 대민보건서비스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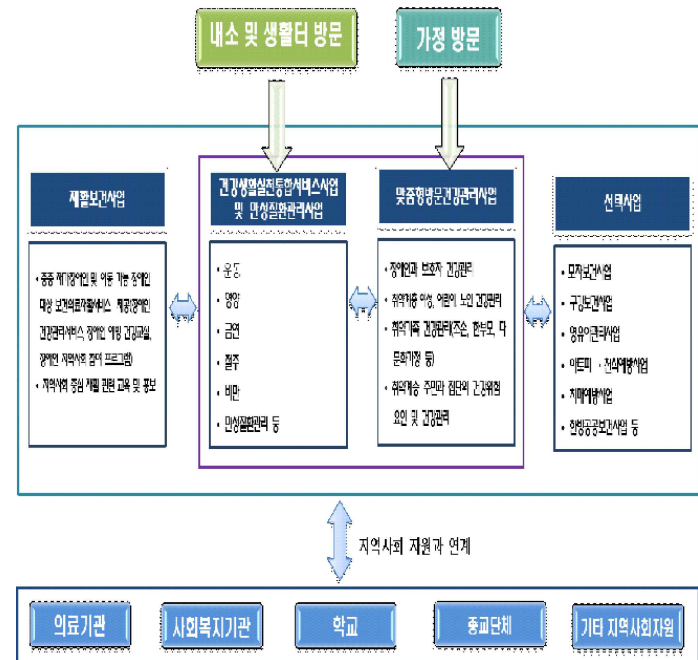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도 >

□ 대상자 중심, 질병예방 및 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건강수준별**(건강군, 건강 위험군, 질환관리군) 서비스 접근 방법 차별화
 - 질병 치료서비스보다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중점** 제공
-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중복 비효율 예방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통합 실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의사업 등 **대상자 중심 통합 서비스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효율화

- 민간의료기관은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도시보건지소는 **건강군, 건강위험군, 질환관리군**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집단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 **자원 발굴, 적극적 사업 참여 동반자로** 육성



< 서비스 제공 흐름도 >

5 지침 주요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11년도	'12년도
1. 핵심사업 명칭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사업 5개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 재활보건사업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사업 5개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통합 실시)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 재활보건사업 - 지역사회연계 활성화 * 독립된 사업이 아닌 각 사업의 추진전략임
2. 국고지원 면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실 면적 165㎡(50평)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면적 330㎡(100평)이상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건교육실, 회의실, 관련사업실 등을 포함한 면적
3.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수행을 위한 개보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면적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건물의 기능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 <신설> ○ 기존 도시보건지소 중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배치실의 바닥면적(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면적+실 이동 면적) 총합 최대 330㎡(100평)까지 국고지원범위 외에서 추가 지원
4. 시설비 지원단가 상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증축 489만원(3.3㎡) ○ 개보수 100만원(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증축 162만원(㎡)/535만원(3.3㎡) ○ 개보수 33만원(㎡)/109만원(3.3㎡)
5. 도시보건지소 지원대상지역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은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 및 관할구역 내 농어촌보건지소와 도시보건지소를 공동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

구분	'11년도	'12년도										
6. 시설확충방법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증축, 개보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 ○ 분양매입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지원 금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 - 건물매입·분양규모는 최소 250평 이상 - 건물매입·분양비에서 토지부분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추정)을 제외한 금액에서 최대 89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신축 최대지원금액과 동일) * 단, 건물매입·분양비가 최대 지원금액 보다 적을 경우 실 건물매입·분양비로 지원 </td> </tr> <tr> <td>지원 조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건물 - 건축된지 10년 이하의 건물 - 분양·매입한 건물에서 최소 20년 이상 운영하겠다는 지자체장의 확약서 제출 -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증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등)이 갖추어진 건물 - 임주시 발생하는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분비 확보 계획 제출 - 건물매입·분양 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매입해야 함 - 사용하는 층, 면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간략적인 설계면적(건축평면) 제시 </td> </tr> </table>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 - 건물매입·분양규모는 최소 250평 이상 - 건물매입·분양비에서 토지부분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추정)을 제외한 금액에서 최대 89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신축 최대지원금액과 동일) * 단, 건물매입·분양비가 최대 지원금액 보다 적을 경우 실 건물매입·분양비로 지원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건물 - 건축된지 10년 이하의 건물 - 분양·매입한 건물에서 최소 20년 이상 운영하겠다는 지자체장의 확약서 제출 -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증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등)이 갖추어진 건물 - 임주시 발생하는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분비 확보 계획 제출 - 건물매입·분양 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매입해야 함 - 사용하는 층, 면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간략적인 설계면적(건축평면) 제시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 - 건물매입·분양규모는 최소 250평 이상 - 건물매입·분양비에서 토지부분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추정)을 제외한 금액에서 최대 89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신축 최대지원금액과 동일) * 단, 건물매입·분양비가 최대 지원금액 보다 적을 경우 실 건물매입·분양비로 지원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건물 - 건축된지 10년 이하의 건물 - 분양·매입한 건물에서 최소 20년 이상 운영하겠다는 지자체장의 확약서 제출 -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증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등)이 갖추어진 건물 - 임주시 발생하는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분비 확보 계획 제출 - 건물매입·분양 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매입해야 함 - 사용하는 층, 면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간략적인 설계면적(건축평면) 제시 											
7. 사업관리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분기별 정상추진 일정을 정하여 지연되고 있는 기관 선정 후 집중 관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분기</th> <th>집중 관리기관 선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3월</td> <td>지방비 및 부지 미확보 기관</td> </tr> <tr> <td>4~6월</td> <td>기본설계심의 미신청 기관</td> </tr> <tr> <td>7~9월</td> <td>장비·차량등 구매완료보고서 미제출 기관</td> </tr> <tr> <td>10~12월</td> <td>착공보고서 미제출 기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 필요 ※ 지원유형변경, 대지변경, 면적증감(30% 이상), 복합건물 설계 등 	분기	집중 관리기관 선정 기준	1~3월	지방비 및 부지 미확보 기관	4~6월	기본설계심의 미신청 기관	7~9월	장비·차량등 구매완료보고서 미제출 기관	10~12월	착공보고서 미제출 기관
분기	집중 관리기관 선정 기준											
1~3월	지방비 및 부지 미확보 기관											
4~6월	기본설계심의 미신청 기관											
7~9월	장비·차량등 구매완료보고서 미제출 기관											
10~12월	착공보고서 미제출 기관											

구분	'11년도	'12년도
8. 심의절차 및 시설공사완료 보고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개보수 심의 : 1차 기본설계심의→2차 실시설계심의 ○ 시설공사완료보고서 제출서류 : 공사개요, 설계도서 CD1부(A3반책, 공사도면), 공사감리보고서 1부, 준공사진 출력본 1부(이미지파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개보수 심의 : 1차 기본설계심의(2차 실시설계심의 폐지) ○ 시설공사완료보고서 제출서류 : CD제출(설계도서 PDF변환파일, 준공사진 파일), 도서제출(시설공사완료보고서, 준공사진 출력본1부, 완공도면 중 건축도면(A3반책), 감리보고서)
9. 분양·매입에 대한 선정(평가) 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증축, 개보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 ○ 분양·매입에 대한 선정(평가)기준 추가 ※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지역주민, 민간 참여 등 지역의지, 보건의료취약계층 등 주민의 보건수요도, 건물선정 적절성, 사업추진 방향 적절성, 사업운영 계획 적절성, 국고지원사업 집행율

제2장 | 2012년도 사업추진 계획

1 목표와 추진방향

비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목표

도시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관리등 보건서비스 제공

◇ 접근성 ◇ 효율성 ◇ 포괄성

추진방향

- ◆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서비스 제공
- ◆ 대상자 중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
-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 ◆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 ◆ 시설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 ◆ 시설확충방법 다양화
- ◆ 사업관리 기능 강화

2 지원대상

-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통합시의 보건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만 이상 '동' 지역
 - * 읍·면 지역 및 관할구역 내 농어촌 보건지소와 도시보건지소를 공동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통합시의 보건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만 이하의 '동'지역인 경우에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 지원 가능

<표 2> 지원대상 지역 (2011년 7월 현재)

지역	시·구	개수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7
대전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5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14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4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8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춘천시	6
경기	광주시, 고양 덕양구, 고양 일산동구, 고양 일산서구,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 오정구, 부천 원미구, 부천 소사구, 성남 분당구,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수원 권선구, 수원 장안구, 수원 영통구, 수원 팔달구, 시흥시, 안산 단원구, 안산 상록구, 안성시, 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39
경남	거제시, 김해시,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 성산구, 창원 의창구, 통영시, 밀양시, 진해구	12
경북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 남구, 포항 북구, 경주시	10
전남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4
전북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 덕진구, 전주 완산구, 정읍시	6
충남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6
충북	제천시, 청주 상당구, 청주 흥덕구, 충주시	4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2
소계		157

3 지원내용

3.1 시설

1) 지원대상

- 신규대상으로서 도시보건지소 지원대상 지역의 신청기관

2) 지원내용

- 핵심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면적 825㎡ 지원
 - 핵심사업 중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통합 실시) 수행을 위한 면적***을 최소 330㎡(100평)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만성질환관리 등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하고 그 외 관련 사업실 및 보건교육실, 회의실 등과 연계
- 선택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면적 및 신축비는 **지자체가 추가 확보** 하여야 함

[권고사항] 도시보건지소 표준 대지면적

보건기관 유형	국고 지원 시설 면적(㎡)	표준대지면적(㎡)	비고
도시보건지소	825	1,650	

- * 도시보건지소 대지면적은 도시보건지소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하되, 표준 대지면적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고
- * 표준 대지면적 기준은 국고지원 기준면적에 준하므로 각 기관별 사업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대지면적도 같은 비율로 동시에 증가할 것을 권고
- * 도시보건지소 표준 대지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평가

3) 지원시 고려사항

가. 신축

- 대지면적은 기준면적(표준설계 참조) 이상이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하고, 도시 보건지소는 가능한 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좋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증축

- 대지 :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
- 건물 : 건물조건은 개보수의 경우와 같으며, 증축은 기존 건축 연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이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기준 면적까지만 지원

다. 개·보수

- 대지 :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 건물 : 기준 연면적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건물의 기능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라. 분양·매입

- 정의
-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 “매입”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는 것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건축된지 10년 이하의 건물**이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갖추어진 건물이어야 함
- 건물매입·분양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매입하여야 함

4) 지원금액

가. 지원한도

<신·증축, 개보수>

- 도시보건지소 지원면적에 국고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총 건축공사비 중 국고 지원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추가 지방비 확보
- 국고지원면적에 대한 총 건축공사비의 2/3 지원
(총 건축공사비의 1/3은 필수지방비로서 시도 및 시구가 확보)

<분양, 매입>

- **건물매입·분양비에서 토지부분금액(감정평가에 의해 추정)을 제외한 금액에서 최대 89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신축 지원한도와 동일)
- ※ **대지는 국고지원에서 제외**
- 단, 건물매입·분양비가 최대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 매입·분양금액으로 지원
- 국고지원면적에 대한 총 건물매입·분양비의 2/3 지원
(총 건물매입·분양비의 1/3은 필수지방비로서 시도 및 시구가 확보)
- 매입·분양완료 후 입주시 개보수 비용은 추가지방비 확보 필수
(추가지방비는 개보수 기준인 33만원(m²당) / 109만원(3.3m²당)에 준하여 확보)

나. 지원단가

- 신·증축 : 162만원(m²당) / 535만원(3.3m²당)
- 개보수 : 33만원(m²당) / 109만원(3.3m²당)
- 분양·매입 : 최소 825m²(250평)이상 분양·매입해야 하며 최대 891,000천원까지 국고지원

다.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율

-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하여 지원
- 차등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 부분은 지방비 부담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요청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실 확인 후 직권 조정

<표 3>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 지원 차등 비율(신·증축, 개보수)

재정자립도 구분	지원금액 차등비율	국고 지원 한도	지방비 부담 금액
40%미만	100%	총 건축공사비 × 2/3	총 건축공사비 × 1/3
40%이상 ~ 60%미만	90%	총 건축공사비 × 2/3 × 90%	(총 건축공사비 × 1/3) + (총 건축공사비 × 2/3 × 10%)
60%이상	80%	총 건축공사비 × 2/3 × 80%	(총 건축공사비 × 1/3) + (총 건축공사비 × 2/3 × 20%)

<표 4>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 지원 차등 비율(분양·매입)

재정자립도 구분	지원금액 차등비율	국고 지원 한도	지방비 부담 금액
40%미만	100%	총 건물매입·분양비 × 2/3	총 건물매입·분양비 × 1/3
40%이상 ~ 60%미만	90%	총 건물매입·분양비 × 2/3 × 90%	(총 건물매입·분양비 × 1/3) + (총 건물매입·분양비 × 2/3 × 10%)
60%이상	80%	총 건물매입·분양비 × 2/3 × 80%	(총 건물매입·분양비 × 1/3) + (총 건물매입·분양비 × 2/3 × 20%)

【 시설분야 지원금액 예시 】

- A구 요청사항
 - 시설 신축 : 핵심사업 825㎡ 요청(선택사업 없음)
 - 재정자립도('11년) : 32.1%인 경우 → 지원금액 차등비율 100% 적용
→ (국고지원) 250평(825㎡)×1,620,000원(지원단가)×2/3(국고부담)×100% = 891,000천원
→ (필수지방비) 250평(825㎡)×1,620,000원(지원단가)×1/3(지방비부담)×100% = 445,500천원
(단위: 천원)

총 액	국고지원요청액 (2/3)	지방비	
		필수지방비(1/3)	초과지방비(+a)
1,336,500	891,000	445,500	-

- B구 요청사항
 - 시설 신축 : 990㎡ 요청시 [핵심사업(825㎡) + 추가(165㎡)]
 - 재정자립도('11년) : 44.6%인 경우 → 지원금액 차등비율 90% 적용
→ (국고지원) 250평(825㎡)×1,620,000원(지원단가)×2/3(국고부담)×90% = 801,900천원
→ (필수지방비) {250평(825㎡)×1,620,000원(지원단가)×1/3(지방비부담)×90%} + {250평(825㎡)×1,620,000원(지원단가)×2/3(국고부담)×10%} = 490,050천원
→ (초과지방비) 50평(165㎡)×1,620,000원(지원단가) = 267,300천원
(단위: 천원)

총 액	국고지원(825㎡)요청액 (2/3×90%)	지방비	
		필수(825㎡)지방비 (1/3 +(2/3×10%))	초과(165㎡)지방비(+a)
1,559,250	801,900	490,050	267,300

라. 지원금액의 사용범위

- 지원금액은 핵심사업 면적(825㎡)내에서 지원되고, 지원기준 이상의 건축 및 매입·분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 설계안 작성 시 국고 지원기준면적의 5% 면적증감은 가능함. 단, 그 이상의 증가면적은 반드시 m²당 국고 지원기준 단가를 적용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공사하여야 함

- 지원액은 사업승인면적의 **건축공사비 및 건물매입·분양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함
 - 지원면적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2/3)을 제외한 필수 건축공사비(1/3)
 -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 부족분
 - 대지매입비(시유지, 구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확보)
 - 담장, 옹벽(부대시설), 별도의 옥외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포장,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분 외의 절/성토
 - 기존 시설의 철거 및 폐자재처리, PILE 지정, 동결심도를 초과하는 깊이의 기초공사 비용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의 사업비 (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은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면적에 대한 건물매입·분양비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금액(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 매입·분양 완료 후 입주 시 개보수 비용

3.2 보건의료장비

1) 지원대상

- 도시보건지소사업에 따른 국고지원(시설분야)이 이루어진 기관
- 도시보건지소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장비 구매가 필요한 기관
 - '12년 신·증축 및 개보수가 완료(예정)된 기관

2) 신청(지원)조건

가. 보건의료장비

- 시설공사가 완료된 기관에 대하여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 가능**
- 보건의료장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의 활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 **소모품이나 100만원 미만의 보건의료장비는 지원제외(지방비로 구입)**
 - * 전산장비(노트북, 프린터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표준의료장비목록에 '국고지원장비'와 '자체구매장비'로 구분하여, 국고 지원항목에 한해서만 지원
 - ※ II-제2장 '5. 도시보건지소 표준의료장비목록'을 반드시 참조하여 신청

나. 보건사업용 차량

- 보건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도시보건지소로서 **보건사업차량, 장애인 차량** 신청 가능하며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조정**
 - **보건사업차량은 기관당 최대 2대 이내** 신청 가능
 - **장애인차량은 기관당 1대** 신청 가능

3) 지원금액

가. 보건의료장비

- 총 사업비의 2/3로서 사업비의 1/3은 지방비 확보
- 국고 기준 1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기준 이상 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국고 지원한도	지방비 부담 금액	비고
총사업비 × 2/3 (1억원 한도)	총사업비 × 1/3	

나. 보건사업용 차량

- 총 사업비의 2/3로서 사업비의 1/3은 지방비 확보
- 국고 기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지원기준 이상 차량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 **보건사업차량** : 조달청에 선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보건사업용 차량(기아 '프라이드') 구매 가격의 2/3 지원

*예시) 1,200만원의 보건사업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국고 지원한도인 2/3인 860만원을 지원하고, 1/3인 430만원은 지방비로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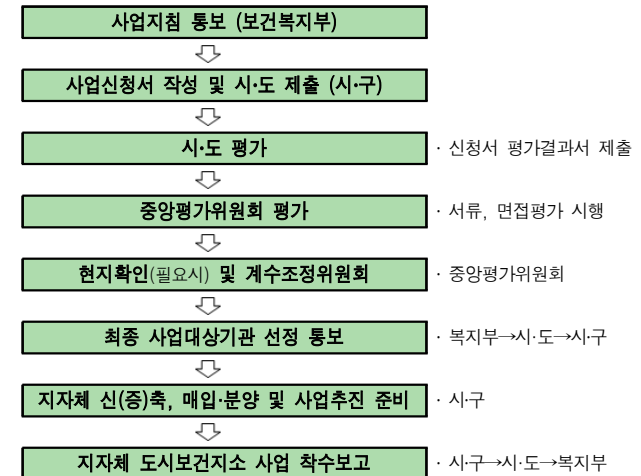
- **장애인차량** : 25인승(장애인차량 개조전) 이하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 장치 등 특정사양을 구비한 차량 지원

*예시) 3,000만원의 장애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3가격인 2,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

국고 지원한도	지방비 부담 금액	비고
총사업비 × 2/3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 × 1/3	

4 사업추진

4.1 추진 절차



<그림 1> 사업절차 흐름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시·구에 배부
- 시·구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구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한 후, 시·구의 사업신청서 및 평가결과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사업신청서 중앙평가 실시 및 최종 사업대상기관 선정
- 지자체는 사업신청서(계획서)에 따른 신(중)축, 매입·분양 및 사업추진 준비
- 지자체는 도시보건지소 사업착수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

출

4.2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신청서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 사업신청서는 시설, 보건의료장비분야로 나누어 지원요청 분야가 있는 부문에 작성
- 시·도 평가결과서(별지 제2-1호 서식)

나. 시설 분야 제출서류

- 시설분야 요약문(별지 제1-2호~제1-4호 서식)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보건지소에 15명의 인력(5급 보건지소장 포함)을 확보하여 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보건지소 운영계획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사본
 -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사본
 - 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지확보계획서
 - 분양·매입의 경우 건물매입·분양계획서(감정평가에 의해 측정된 토지부분 금액을 제외한 건물매입·분양비, 건축물의 정보가 기입된 건축물대장 등), 매입한 건물에서 최소 20년 이상 운영하겠다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 사본, 사용하는 층 및 면적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간략적인 설계안(건축평면), 입주 시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방비 확보계획 등 추가 제출

- 시·구 소유건물의 개보수는 관련 증빙서류
- 지역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참여동의서, 시설(부지) 접근성 및 민원편의 대체시설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 일체
- 사업대상기관 선정시 예산확보, 인력채용, 시설공사 등의 일정을 포함한 세부 추진일정

다. 장비분야 제출서류

- 장비분야 요약문(별지 제1-5호 서식)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설현황, 관할구역, 설치위치, 시설분야 사업추진경과, 사업 및 인력현황, 보건의료장비 국고지원 요청항목, 향후 장비분야 세부추진일정

2) 제출방법

- 시·구 사업신청서 10부와 관련 CD 1부, 시·도 평가결과서 1부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로 2011년 8월 31일까지 제출

4.3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1) 평가절차

- 사업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 평가와 중앙평가 실시

가. 시·도 평가

- 시·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평가 실시
- '시·구의 사업신청서', '평가결과서(평가 점수 및 순위 명기)'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에 제출
 - ※ 시·도 평가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앙평가 기준(사업추진 의지, 지역선정의 적절성, 사업추진 방향의 적절성, 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 국고지원사업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선정

나. 중앙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1차 평가 : 시·구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서면평가
- 2차 평가 : 면접 평가
- 현지 확인조사
 - 중앙평가위원회 평가시 현지조사 필요성을 제기된 경우 등에 한하여 현지 확인조사 실시
 -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수조정위원회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분야별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최종대상지역 선정
 - 현지 확인조사 및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
 - 만약, 신청서 수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선정지역에서 제외 (차순위 지역 선정)

2) 선정(평가) 기준

가. 시설

- 사업추진의지, 지역선정 및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국고집행 실적 등 평가

<표 4> 신·증축, 개보수 신청서 평가항목과 배점(안)

구분	'11년도			
기준	배점	소분류	정의	세부배점
사업추진 의지	10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인력,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의지 반영 ※ 지자체장 확인서	5
		지역주민, 민간참여 등 지역의지	지역주민, 민간의료기관 등의 의지 반영 ※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등	5
지역 선정의 적절성	20	보건의료취약계층 등 주민의 보건수요도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으로 수요도 (취약계층 비율, 보건의료접근성 등)	10
		부지 선정 적절성	표준 대지 면적 적절성 시설(부지) 접근성 및 민원편의 대체시설 확보등 신축부지 확보 여부	10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60	사업추진 방향 적절성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할 분담 방향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의 적절성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계획 사업추진일정	20
		사업운영 계획 적절성	핵심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인력, 예산, 사업운영, 사업면적, 운영체계 등) 선택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방법, 운영체계 등)	40
국고지원 사업 집행실적	10	국고지원사업 집행률	국고지원사업의 집행률 ※ 복지부 내부자료('11년 집행실적 기준)	10
합계	100			100

* 증축 및 개보수 신청서 '부지선정의 적절성(10점)' 평가항목 : 표준대지 면적 적절성, 시설(부지) 접근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타당성

* 제시한 배점표는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표 5> 분양·매입 신청서 평가항목과 배점(안)

구분	'11년도			
기준	배점	소분류	정의	세부배점
사업추진 의지	10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인력,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의지 반영 ※ 지자체장 확인서 ※ 매입한 건물에서 최소 20년 이상 운영하겠다는 지자체장의 확인서	5
		지역주민, 민간참여 등 지역의지	지역주민, 민간의료기관 등의 의지 반영 ※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등	5
지역 선정의 적절성	20	보건의료취약계층 등 주민의 보건수요도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으로 수요도 (취약계층 비율, 보건의료접근성 등)	10
		건물 선정 적절성	시설 접근성 및 민원편의 대체시설 확보등 ※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 매입(분양)건물 확보 여부 건축물의 안전성 및 타당성 ※ 최초건축년도(최소 10년 이하의 건물)	10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60	사업추진 방향 적절성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할 분담 방향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의 적절성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계획 사업추진일정	20
		사업운영 계획 적절성	핵심사업 운영계획 적절성(인력, 예산, 사업운영, 사업면적, 운영체계 등) 선택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사업대상, 내용 및 방법, 운영체계 등)	40
국고지원 사업 집행실적	10	국고지원사업 집행률	국고지원사업의 집행률 ※ 복지부 내부자료('11년 집행실적 기준)	10
합계	100			100

* 제시한 배점표는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보건의료장비

- 장비 구매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을 감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표 6> 보건의료장비 분야 신청서 평가항목과 배점(안)

기준	배점	내용
신청계획의 타당성	40	·40점 : 신청 장비에 대한 타당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 도시보건지소 추진사업 내용에 필수적인 장비를 신청한 경우 ·30점 : 신청장비에 대한 타당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장비가 도시보건지소 추진사업 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20점 : 신청장비에 대한 이용계획에 일부 문제가 있으면서 도시 보건지소 추진사업 내용에 필수적인 장비를 신청한 경우 ·10점 : 신청장비에 대한 이용계획에 일부 문제가 있으면서 일부 장비가 도시보건지소 추진사업 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0점 : 신청장비에 대한 이용계획이 타당하지 않거나 기술하지 않은 경우
장비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40	·40점 : 장비명, 모델명, 장비 사용인력, 예상 사용건수, 사후관리계획, 사용계획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계획이 적절한 경우 ·30점 : 장비명, 모델명, 장비 사용인력, 예상 사용건수, 사후관리계획, 사용계획을 모두 기술하였으나 일부 계획이 적절치 않거나 기술이 형식적인 경우 ·20점 : 장비명, 모델명, 장비 사용인력, 예상 사용건수, 사후관리계획, 사용계획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계획이 적절치 않은 경우 ·10점 : 장비 운영계획의 기술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0점 : 장비 운영계획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	20	·20점 : 적절(해당 도시보건지소 수준에 맞는 장비) ·10점 : 장비 사양 및 가격이 일부 미흡한 경우 ·0점 : 장비 사양 및 가격이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합계	100	

* 제시한 배점표는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4.4 지원대상 제외기준등

1) 사업의 포기

- 도시보건지소 사업포기로 국비를 반납한 경우, 반납한 해의 익년부터 2년간 사업신청 제외

2) 계획된 사업의 미수행 및 사업운영이 곤란한 경우

- 도시보건지소 지침 및 승인된 지자체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서와 달리 핵심사업 미수행, 사업인력 미확보 등으로 사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고 환수 가능

3)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당초 승인된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에서 관할지역, 설치위치, 사업인력(정규직에 한함), 조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보건지소 사업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 변경시 해당 시·도 및 시·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표 7> 변경승인기준

분야	내용	변경승인기준
시설	지원 유형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신축, 이전신축, 증축, 개보수, 분양·매입의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외, 승인불가
	대지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매입·분양 건물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매입·분양 건물이 변경되는 경우
	면적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면적보다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복합 건물	· 계획서 제출 당시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장비	장비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장비를 타 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조직 등	· 계획서에 제출한 정규직 인력 수 및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역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관할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4.5 사업착수보고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도시보건지소 사업착수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

2) 제출방법

- 사업착수보고서 1부와 관련 CD 혹은 파일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로 신(중)축 또는 개보수가 완료되어 도시보건지소 사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
- * 신(중)축 및 개보수 전에 기존 도시보건지소에서 사업 착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

5 추진체계 및 일정

5.1 추진체계

추진주체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중앙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 등 총괄 ○ 사업지침 제 개정 및 배포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운영 모니터링, 예산배분 등 사업관리 ○ 지원대상 지역 선정
광역자치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검토 조정 및 조례개정 등 행정적 지원 ○ 사업보건소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 지도 감독 ○ 시·구 사업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총괄 제출 ○ 시·구 사업신청서 평가 및 결과 보건복지부에 제출 ○ 기타 도시보건지소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조정
지방자치단체 (시·구 및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 지침에 의한 국고지원대상의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설계심의 신청,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를 지역보건사업지원단에 제출 -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지역보건사업지원단에 제출 ○ 사업추진 실적보고 ○ 준공 및 사업 착수보고서를 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수행 실적보고

5.2 추진일정

추진사항	일정	수행주체
○ 도시보건지소사업 지침 수립·시달	'11년 7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도시보건지소사업 신청서 작성 및 시·도 제출	'11년 8월 24일	시·구→시·도
○ 도시보건지소사업 신청서 및 시·도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에 제출	'11년 8월 31일	시·도→보건복지부
○ 중앙평가위원회	'11년 9월	보건복지부
○ 현지확인조사	'11년 9월	보건복지부
○ 계수조정위원회	'11년 9월	보건복지부
○ 대상지역 선정 및 통보 - '12년도 예산 가내시 통보	'11년 9월 중	보건복지부

II. 신청서 작성지침

제1장 | 시설 분야 신청서 작성지침

1 사업목적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지역 사회의 상태, 또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강문제에 대해 기술함

2 지역현황

1) 인구현황

- 가장 최근의 인구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인구 현황을 동별로 파악·분석하여 인구현황을 제시
 - ※ 도농통합시의 경우, 읍·면에 대해서도 제시

① 취약인구 (2010년 12월말 기준)

지역(동)	구분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록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자		취약인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동												
○○동												
:												
합계	시구 전체											
	지소관할지역											

- *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가정복지과 혹은 사회과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백분율(%)은 해당 인구수(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체인구수로 나눈 값 × 100 으로 산정
- * 인구수는 동별 전체 인구수를 기입하도록 하며, 취약인구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대상자를 합한 인구수를 기입하도록 함

2) 주요 건강행태 및 건강문제 현황

- 도시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및 선택사업 관련 지역사회 내 주요 건강행태 및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설치 필요성 제시
 - ※ 주요 건강행태 및 건강문제 현황은 도시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표만 나열하는 형식이 아닌 지역사회 내 주요건강행태 및 건강문제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기 바람
- 이들 자료는 대표성있는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지역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하되, 반드시 자료원을 명기하여야 함

【예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 성인 비만율, 운동실천율, 연도별 나트륨 섭취비율, 비만유병율, 음주율, 흡연율 등
-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유병률, 혈압조절약의 정기적 복용율,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등
-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유병률, 당뇨병 치료율,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안 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등

① 주요 건강행태 현황과 건강수준(* 가급적 전국/광역 단위 비교제시)

분야	영역	지표	해당 지자체 현재 수준	시도 수준	전국 수준	자료원
건강생활 실천통합 서비스 및 만성질환 관리	1. 고혈압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유병율				
		혈압조절약의 정기적 복용율				
		:				
	2. 당뇨병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유병율				
		당뇨병 치료율				
		:				
	3. 흡연	당뇨병 안전한 합병증검사 수진율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율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4. 음주	:				
		평생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5. 비만	:				
		소득수준별 비만유병율				
...						

3)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자원과 협조 가능한 지역외부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술함
- 도시보건의료 설치예정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기 바람

① 관내 의료기관 현황

(2010년 12월말 기준)

의료기관 종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지역(동)							
○○동							
○○동							
○○동							
:							
계							

② 건강증진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2010년 12월말 기준)

구분	시설 및 기관수	명칭	관련사업	비고
전문가단체	개소			
자원봉사자 조직	개소			
기타	개소			

* 보건소 담당자가 아닌 단체나 개인, 조직의 대표 및 담당자를 기입하도록 함

③ 기타 지역사회자원

- 의료기관, 건강증진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외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술

(2010년 12월말 기준)

구분	시설 및 기관수	명칭	관련사업	비고
사회복지기관	개소			
종교단체	개소			
기타	개소			

4) 기타 지역의 특수 사항

- 도시보건의료 설치 및 운영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지리학적, 문화적 특수사항을 기술

예) 취약계층 밀집지역, 노인이 많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권역이 분절된 지역, 공단의 유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체육, 운동시설 등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3 설치 장소

1) 지원 요청 유형 : 신축 증축 개보수 분양 매입

2) 대지(건물)확보현황 : 기확보 미확보(확보예정)

3) 지원요청 세부내용 (해당하는 부분 작성)

가. 신·증축

설치위치(주소)								
관할구역(동)								
보건소와의 거리	_____ km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_____분)							
시구 총인구/취약인구 관할지역 총인구/취약인구	시구 총인구_____명 / 취약인구 _____명(시·구 총인구의 _____%) 관할지역 총인구_____명 / 취약인구 _____명(시·구 총인구의 _____%)							
관할구역내 민간의료기관 현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총계
지역·지구								
계획 건축면적(m ²)								
대지면적(m ²)								
확보(예정)시기								
확보방법								
선정사유 (타당성 기술)								

나. 개보수

설치위치(주소)																	
관할구역(동)																	
보건소와의 거리	_____ km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____분)																
시구 총인구/취약인구 관할지역 총인구/취약인구	시구 총인구 _____명 / 취약인구 _____명(시·구 총인구의 __%) 관할지역 총인구 _____명 / 취약인구 _____명(시·구 총인구의 __%)																
관할구역내 민간의료기관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병원</th> <th>병원</th> <th>의원</th> <th>치과병원</th> <th>치과의원</th> <th>한방병원</th> <th>한방의원</th> <th>총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총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총계										
지역·지구																	
건축연면적(m ²)																	
개보수되는 건축연면적(m ²)*																	
대지면적(m ²)																	
건물 준공연도																	
건물구조형식																	
건물규모 / 사용층수*	/																
건물 총주차대수																	
실사용 주차대수*																	
확보(예정)시기																	
확보방법																	
선정사유 (타당성 기술)																	

* 건물의 일부를 개보수 할 경우 해당됨

다. 분양·매입

설치위치(주소)																	
관할구역(동)																	
보건소와의 거리	_____ km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____분)																
시구 총인구/취약인구 관할지역 총인구/취약인구	시구 총인구 _____명 / 취약인구 _____명(시·구 총인구의 __%) 관할지역 총인구 _____명 / 취약인구 _____명(시·구 총인구의 __%)																
관할구역내 민간의료기관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병원</th> <th>병원</th> <th>의원</th> <th>치과병원</th> <th>치과의원</th> <th>한방병원</th> <th>한방의원</th> <th>총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총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총계										
지역·지구																	
대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매입,분양 건축연면적(m ²)**																	
건물매입·분양비(예정금액)*																	
건물 준공연도																	
건물구조형식																	
건물규모 / 사용층수**	/																
건물 총주차대수																	
실사용 주차대수**																	
확보(예정)시기																	
확보방법																	
선정사유 (타당성 기술)																	

* 건물매입·분양비는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된 토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작성함

** 건물의 일부를 분양·매입할 경우 해당됨

4) 도시보건지소 설치 위치

- 당해 『시·구 행정구역지도』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표시하고,
- 도시보건지소 설치위치를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표시한 행정구역도 제출

< 도시보건지소 설치장소 >

☞ 도시보건지소 설치장소를 표시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본소) 위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사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에 위치 표시)

4 사업선정

1) 사업선정(안)

- 도시보건지소에서 수행할 사업을 선정하여 필요한 인력, 공간 및 면적을 제시하도록 함
- 도시보건지소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통합 실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함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통합 실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안내」에 있는 각 사업별 지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재활보건사업은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지역사회연계 활성화는 도시보건지소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 독립된 사업이 아닌 각 사업의 추진전략임
- 또한,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선택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선택사업은 지역현황, 지역사회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수사항 등을 분석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선택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도시보건지소는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의 **미충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등 핵심사업과 연계한 필수적인 진료는 수행하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 단, 단순감기환자 등 급성기질환자 대상 일반진료서비스는 제한

< ○○○지역 도시보건지소의 사업 >

핵심사업	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인력			
	필요 공간			
	면적 (m ²)			
선택사업	사업		
	인력			
	필요 공간			
	면적 (m ²)			

※ 도시보건지소 사업(안)을 참고하여, 다음 표에 해당되는 사업에 인력 및 공간을 기입하도록 함
 ※ 인력, 면적은 '인력배치 계획' 및 '각 실별 필요면적'을 참조하여 요약하여 작성

< 도시보건지소의 사업(안) 예시 >

핵심사업	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인력	의사 1인(겸임) 간담매니저 1인(전임) 간호사 1인(전임) 영양사1인 1인(전임) 운동관련 자격소지자 1인(전임)	의사 1인(겸임) 방문간호사 4인(전임)	의사1인(겸임) /재활의학전문 의(협력) 간호사 1인(전임) 물리치료사 1인(전임) 자원봉사자 다수
	필요 공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공간 상담실 보건교육실 소회의실	상담실	운동치료실 온열치료실 작업치료실
	면적 (m ²)	330
선택사업	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인력	의사 1인(겸임) 간호사 1인(전임)	의사 1인(겸임) 간호사 1인(전임)
	필요 공간	구강보건실	모자보건실
	면적 (m ²)

2) 각 실별 필요면적

-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함

■ 핵심사업

실 명	지침면적(m ²)		필요면적(m ²)			비고	
	실수	단위면적(m ²)	면적계(m ²)	실수	단위면적(m ²)		면적계(m ²)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접수공간							
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라. 재활보건사업							
마. 기타							

■ 선택사업

실 명	지침면적(m ²)			필요면적(m ²)			비고
	실수	단위면적(m ²)	면적계(m ²)	실수	단위면적(m ²)	면적계(m ²)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나.							
다.							
라.							
마.							
바.							

3) 인력배치 및 확보 계획

- 총 인력은 최소 15인 이상으로 하되, 10인 이상은 정규직공무원으로 하고, 추가인력은 기간제등 확충 가능
- 핵심사업에 반드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전체 인력의 60% 이상을 핵심사업에 배치하도록 보건사업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규인력은 가급적 핵심사업에 배치하여야 함
- 의사는 1~2인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명은 정규인력으로 채용(공중보건 의사로 대체 불가)하고 추가되는 1명은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도시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임용함

가. 도시보건지소 전체 인력에 대한 직급, 직렬별 배치계획(기간제 포함하여 작성)

직급	직렬	소요 인력 (명)								
		계	의무	간호	보건	행정	의료기술	기간제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나. 사업별 배치계획(기간제 포함하여 작성)

사업내용	소 계	소 요 인 력 (명)								
		의 사	간 호 사	영 양 사	물 리 치 료 사	사 회 복 지 사	기 간 제	...	행 정 요 원	기 타
핵심사업	전담									
	겸직									
	전담									
	겸직									
	전담									
	겸직									
소 계	전담									
선택사업	전담									
	겸직									
	전담									
	겸직									
소 계	전담									
총 계	전담									

다. 도시보건지소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

- 도시보건지소는 **15명 이상**을 배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한 계획(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 신규인력 정원 확보 방안, 기존 인력 배치 조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장 의지 및 인력 담당 부서 등과 협의 내용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조직 운영(안)

가. 보건소와 도시보건지소와의 역할 분담 방안

-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건소와의 역할 분담 방안, 보건소 역할과 다른 도시보건지소 중점 추진사항 등을 작성함

나. 도시보건지소 조직도(안)

- 보건소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도(안)** 작성

5)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가. 도시보건지소 사업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방안

- 도시보건지소에서 사업(핵심+선택)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지역사회 연계 대상(조직), 연계방법, 연계 할 구체적 내용 등 기술

5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지자체에서 선정한 사업(핵심+선택) 각각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별도로 기술하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기존 수행한 사업실적을 첨부하여야 함
- 도시보건지소 사업대상은 도시보건지소 관할 구역으로 한정하며, 보건소와 도시보건지소의 역할과 사업수행방법 등에 대해 구분하고 취약계층 집중 발굴, 사업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이 될 수 있도록 작성

1) 사업명

가. 사업의 선정배경

- 도시보건지소에서 해당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 작성
 - '2. 지역현황'에서 기술한 취약인구, 사업과 관련한 건강행태 및 수준, 지역사회 자원 등을 분석하여 사업선정 배경 등을 작성

[예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통합 실시)

- 비만율, 신체활동율, 고혈압·당뇨병 등 지속관리율 수준 등 지역내 통계자료 제시
- 지역주민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적정관리 등에 대한 요구 등 자료를 통해 사업 선정 타당성 제시

나. 사업 목적 및 목표

① 목적(goal)

-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outcome)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진술이며, 건강수준이나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를 가리킴

② 목표(objectives)

- 측정할 수 있는 용어로 진술되고, 달성할 수 있는 영향(impact)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며, 각각의 목표는 한 가지 아이디어만 전달해야 하며, 목표 하나 하나는 한가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목표에서는 얼마나 많이, 무엇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산출목표 : 의도하는 사업량(activity)
예) 인력투입에 따른 등록관리 가구, 인력투입에 따른 방문횟수 등
 - 결과목표 :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수준이나 건강결정 요인의 변화
예) 전년도 등록관리 대상 건강수준 대비 건강수준 향상률

다.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의 유형과 수를 명시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이유를 기술함
 - ※ **사업대상은 도시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으로 한정함(지자체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
 - ※ 단순감기환자 등 급성기 질환자 대상 진료서비스는 제한함

라. 사업내용

- 각 사업대상자에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기술함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통합 실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안내」에 있는 각 사업별 지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재활보건사업은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지역사회연계 활성화는 도시보건진료소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독립된 사업이 아닌 각 사업의 추진전략임

- 또한,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선택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선택사업은 지역현황, 지역사회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수사항 등을 분석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선택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도시보건진료소는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의 **미충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등 핵심사업과 연계한 필수적인 진료는 수행**하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 단, **단순감기환자 등 급성기질환자 대상 일반진료서비스는 제한**

마. 유관기관과 협조 및 연계 방안

바. 사업추진일정

사. 자체평가계획

-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종료될 때 까지 사업의 진행도와 사업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기술함
- ① 사업과정 및 결과 평가의 방법
 - 사업의 과정 및 결과 평가를 위한 계획(평가방법, 지표, 자료수집, 담당자, 일정 등)에 대해 기술함
- ② 사업 결과 평가의 향후 활용방안
 - 사업 결과 평가를 향후 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사업의 계획 및 수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함

6 소요예산

- 도시보건지소 시설(신·증축, 개·보수, 분양·매입), 보건의료장비를 위한 소요예산 및 국고지원 요청액을 기술함
- 분양·매입의 국고지원요청액은 건물매입·분양비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된 토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작성함
 - ※ 최대 89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함, 단, 건물매입·분양비가 최대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 건물매입·매입비로 지원
- 인건비 및 사업비(운영비)는 국고 지원 사항이 아님(지방비 100%)
- 매입·분양의 경우 입주시 소요되는 개보수비용은 지방비 확보(지방비 100%)
- 보건의료장비 국고지원은 도시보건지소 건물(신·증축, 개·보수, 매입·분양)이 완료(예정)되어 도시보건지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지원
 - ※ '11년도에 시설 국고지원을 받아, '13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경우 '12년도에 국고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표 8> 소요예산 및 국고지원 신청액

(단위: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필수 건축공사비 (건물매입·분양비)*	초과 건축공사비 (건물매입·분양비)**	소계

* 필수건축공사 지방비는 전체 총공사비 중 국고지원금액(국고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필수건물매입·분양 지방비는 전체 총건물매입·분양비 중 국고지원금액(총 건물매입비×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초과건축공사비는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고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당 국고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사업추진 가능

**** 초과건물매입·분양비는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고 지원 면적(총 250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건물매입·분양비를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사업추진 가능

7 추진일정

- '11년 9월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11년 9월부터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위한 세부 일정계획을 기술함
- '12년도 본예산에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지방비 미확보시 선정취소 예정), 도시보건지소 사업추진계획, 인력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국고가 이월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설 공사 조기착수, 건물의 매입·분양 등 시설 공사 및 매입·분양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2장 | 보건의료장비 분야 신청서 작성지침

1 시설현황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 현황	선정년도	_____년			
	국고지원 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매입			
	건축면적(㎡)	_____㎡			
	대지면적(㎡)	_____㎡			
	착공(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준공(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건물매입·분양(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관할구역(동)	_____				
설치위치(주소)	_____				
인구 현황	시·구	총인구	_____명		
		취약인구	_____명 (시·구 총인구의 _____%)		
	관할 지역	총인구	_____명		
		취약인구	_____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_____%)		
인 력	총 배치 인력	_____명(신규확보 _____명, 인력재배치 _____명, 기타 _____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_____명, 비정규인력 _____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_____명(총 인력의 _____%)			
	비고(인력확보방법등)	_____			
사 업 선 정	핵심 사업	개수 _____개			
	선택 사업	개수 _____개			
	핵심 사업 명칭	_____			
	선택 사업 명칭	_____			
예 산			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필수지방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추가지방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총 사업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재정자립도(2011)	_____%				
추진경과	_____				

* 분양·매입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신·증축, 개보수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2 사업선정 현황

1) 도시보건지소 사업 선정 현황

- 해당 도시보건지소가 선정한 핵심 및 선택사업에 대한 인력, 공간 및 면적을 제시함

* 『제1장 시설분야 신청서 작성지침』의 『4. 사업선정』 참고하여 작성

< ○○○지역 도시보건지소의 사업 >

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맞춤형방문간호사업	재활보건사업
핵심사업	인력		
	필요 공간		
	면적 (㎡)		
	사업	
선택사업	인력		
	필요 공간		
	면적 (㎡)		

2) 사업 세부내용

- 도시보건지소에서 수행되는 사업명(핵심+선택), 인력, 사업내용을 작성하기 바람
- * 당초 승인된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에서 관할지역, 설치위치, 사업인력(정규직에 한함), 조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보건지소 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다만, 도시보건지소 선정 당시와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당초, 변경을 구분 표시)

사업명	인력	사업내용(간략히 작성)	비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 예시 의사 ○명(전임) 간호사 ○명(전임) 영양사 ○명(겸임)	○ - *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배경, 사업대상 및 내용, 지역사회 연계방안등 간략히 작성	

3 필요장비

1) 보건의료장비

가. 보건의료장비 구매 필요성

- 도시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장비 구매의 필요성 작성

나. 장비 활용 방안

- 앞서 기술한 보건의료장비 필요에 근거하여 장비 활용을 위한 인력배치 및 수급 계획
-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작성

다. 국고요청사항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건의료장비 목록 및 활용 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함
- 소모품이나 100만원 미만의 보건의료장비, 전산장비(노트북, 프린터 등)는 지원제외(지방비로 구입)
- 표준의료장비목록에 '국고지원장비'와 '자체구매장비'로 구분하여, 국고 지원항목에 한해서만 지원

※ II-제2장 '5. 도시보건지소 표준의료장비목록'을 반드시 참조하여 신청

장비명	총계	예상 총금액 (천원)	
		국고	지방비
보건의료장비			

<표 9> 보건의료장비 국고지원 요청

장비종류		모델명	대수	주사용자명 (직책) 및 소요인력계획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 (주요대상사업명기) (예산사용건수 포함)	설치 예정 장소	요구되는 기능	예정가격 (단가)	사후관리 (A/S)계획	국고 지원 장비 여부
사업부문	장비명									
총계	X				X	X	X	X	X	X

※ 작성시 주의사항

- 표준의료장비목록에 '국고지원장비'와 '자체구매장비'로 구분하여, 국고지원항목만 지원하므로 국고지원여부 항목에 여, 부로 기입
- 소액기구, 비품, 소모품 등은 신청 제외
- 『모델명』란에는 기존 보유 장비의 모델명을 정확히 기입하고(영문인 경우에는 영어 우선), 제조원과 수입원을 기록
- 『주사용자명(직책)』란에는 공식 책임자가 아닌, 실제적인 해당 장비의 전담인력의 이름과 자격 또는 면허상의 직책(직급이 아님.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으로 기록함)을 기록
 - 복수일 경우에는 모두 기록
-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란에는 신청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활용계획을 기재함(기록을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입)
 - 주요 대상사업을 기입하되 해당 장비가 그 사업에 중요한 사업만 기록하며, 아울러 장비설치 시 예산이용건수를 추정하여 반드시 기재
- 『설치 예정 장소』란에는 구입할 장비의 설치 예정 장소를 기록하되, 신·증축, 개보수를 한 후 장비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명 기재
- 『요구되는 기능』란에는 신청 장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구매사유 등에 비추어 신청하는 기능, 사양, 옵션품목 등을 주요한 것만 간략히 기재
- 『예정가격(단가)』란에는 필요한 옵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업체 등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총액을 (장비단가에 장비대수를 곱한 가격을 의미함) 표시하며, ()안에는 장비단가를 표시
- 사후관리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기록될 내용을 기준으로 자세히 기입

2) 보건사업용 차량

- 도시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업용 차량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2/3로서 사업비의 1/3은 지방비 확보해야 함
- **보건사업차량** :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당 최대 2대 이내 지원 가능하며, 조달청에 선정되어 등록(기아 '프라이드')되어 있는 보건사업차량만 신청가능하며 그 외의 차종은 지원하지 않음
 - *예시) 1,200만원의 보건사업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국고 지원한도인 2/3인 800만원을 지원하고, 1/3인 400만원은 필수 지방비로 해야 함
- **장애인차량** : 재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25인승(장애인차량 개조전) 이하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특정 사양을 구비한 장애인 차량을 기관당 1대만 신청 가능
 - *예시) 3,000만원의 장애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3가격인 2,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

가. 차량 신청 내역

장비명	신규차량	단가 (천원)	필요사유 및 사용계획	예상총금액 (천원)	
				국고	지방비
보건사업차량	대				
장애인차량	대				

나. 차량 구매 필요성

- 보건사업 및 장애인 차량을 구매하여야 하는 사유를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 보건사업차량 및 장애인차량 별도로 기술

다. 차량 운영계획

- 보건사업차량 및 장애인차량 별도로 기술
- 장애인차량의 경우, 차량이용 대상, 운영내용 등에 대하여 제시함

라. 기대효과

- 차량 활용으로 인한 보건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간략히 기술함

4 소요예산

- 도시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장비를 위한 소요예산 및 국고지원 요청액을 기술함
- 보건의료장비 국고지원은 도시보건의료사업 건물(신·중축, 개·보수, 분양·매입)이 완료(예정)되는 연도에 요청할 수 있음

<표 8> 소요예산 및 국고지원 신청액

(단위: 천원)

구분	총계	국고보조금 (2/3)	지방비		소계
			필수 지방비 (1/3)	초과 지방비 (+a)	
보건의료장비 (차량 포함)	보건의료장비				
	차량	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합계					

【참고】 보건사업차량 구매 방법

- 보건사업차량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는 없음**
- 조달청에 보건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기아 '프라이드') 구매시
 - 보건소 마크 도색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보건사업차량'으로 선정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사업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 구매 불가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보건사업차량 **구매 예시**
(지능형상품정보시스템 <http://www.g2b.go.kr:8100/index.jsp> - 일반검색)



5 도시보건지소 표준의료장비 목록

1.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일반진료(공통)	단위	규격 및 사양	국고지원여부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개	라이트웨이트형	자체구매장비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개	사진 2매걸이용	자체구매장비
혈압계(Sphygmomanometer), 수은주형	개	측정범위 0-300mmHg, 소아용 cuff 및 금속케이스 포함	자체구매장비
자동 혈압계(Auto-Sphygmomanometer)	개	측정범위 혈압0-300mmHg, 맥박 0-200회/분. 정확도 +2%, 최소눈금단위 1mmHg	국고지원장비
검안검이경(Ophthlmo-otoscope)	세트	안저경, 이경 및 부속품 일절 1세트	자체구매장비
체성분 분석기(체지방 측정기)	개	부위별 임피던스값 측정가능, 부위별 지방 측정가능, 재현도 99%이상	국고지원장비
고막채운계	개	1회 측정시간이 10초 이내	자체구매장비
자동 신장/체중계 (Automatic weight/height meter)	개	신장과 체중을 동시에 측정 BMI 측정기능	자체구매장비
휠체어(Wheel chair)	대	folding type	자체구매장비
자동체세동기	대	portable 포함	국고지원장비
내과계	단위	규격 및 사양	국고지원여부
심전도계(EKG)	대	-	국고지원장비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대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자체구매장비
기타	단위	규격 및 사양	국고지원여부
자외선소독기	대	자외선 램프 및 건열(히팅)기능 포함	자체구매장비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대	25Lbs	국고지원장비

2. 재활보건사업(물리치료)

장 비 명	단 위	규 격 및 사 양	국고지원여부
간섭전류 치료기(ICT)	대	중간주파수발전기 및 흡인기 포함	국고지원장비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Auto TENS)	대	전기자극 및 열 복합치료 가능	국고지원장비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대	물리치료용	국고지원장비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대	-	국고지원장비
초단파 치료기(shortwave)	대	time 및 intensity 조절가능	국고지원장비
저주파 치료기(EST)	대	휴대용, 최대치료전류 30mA, 치료주파수 연속통전 가능, 디지털식 모니터	국고지원장비
전기침 치료기(SSP)	대	치료주파수 자동선택 가능 치료시간 조절 가능	국고지원장비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대	온도 조절 가능	자체구매장비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대	보마스 테이블, 정형cox table 등	자체구매장비
온습포 기구(Hot pack)	대		자체구매장비
견인치료기(Traction unit)	대	자동, 경추/요추 겸용	자체구매장비
공기압 치료기	대	-	국고지원장비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FES)	대		국고지원장비
한냉물리치료기	대		국고지원장비
이온도입치료기	대		국고지원장비
종합자극치료기	대	각 기능 개별 검토 후 가능	국고지원장비

3. 재활보건사업(재활치료)

장 비 명	단 위	규 격 및 사 양	국고지원여부
재활사업용 차량	대	25일승(장애인차량으로 개조전)이하,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특정사양을 구비한 차량	국고지원장비
기립훈련기 (Hi-Lo tilt Table)	대	전동 모터, 탈착식 각도조절 작업테이블	국고지원장비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 (Rehab-treadmil)	대	0.1km/H의 초저속으로 시작하여 속도의 증가도 0.1km/H씩 조절가능, 응급 정지버튼 등 안전장치	국고지원장비
자전거 운동기 (cycle)	대	좌식, 입식 고정식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 다리길이 조절가능	국고지원장비
운동용 매트평상(Mat platform)	대	목재, 매트는 청소하기 쉽고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 두께 4cm 이상	자체구매장비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대	상하좌우조절이 용이하며 보행시 다리 꼬임 방지대	자체구매장비
계단보행 훈련기	대	손잡이 부착.	자체구매장비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 ergometer)	대	등속성 및 연속도로 운동치료 수행가능.	국고지원장비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대	어깨넓이 조절 및 높이조절 가능.	자체구매장비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목재	자체구매장비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대	-	자체구매장비
작업치료용 테이블	대		자체구매장비
슬링 (Sling)	대		자체구매장비
상하지 운동기	대	전동, 수동	자체구매장비
좌식 스탬퍼	대		자체구매장비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대		자체구매장비
공압식 무릎훈련기	대		국고지원장비
보바스테이블	대		국고지원장비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대		자체구매장비
작업치료실 세트	세트	맷돌운동기, 스케이트보드, 큰쌍기, ROM 아크, 짐게끼우기, 전완지지장치, 상부지지장치, 페턴보드, 경사판운동기, 고리끼우기 (수직, 수평), 볼트보드, 손가락신전운동기, 손운동도구, 샌더보드, 페그보드, 인지 및 상지훈련도구 등	자체구매장비

4. 건강증진사업 부문

장 비 명	단 위	규 격 및 사 양	국고지원여부
에어로바이크	대	-	자체구매장비
약력측정기	대	-	자체구매장비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대	-	자체구매장비
전신반응 측정기	대	-	국고지원장비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대	-	자체구매장비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대	-	자체구매장비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대	-	자체구매장비
배근력기	대	-	자체구매장비
런닝머신	대	-	국고지원장비
레그 쉐프 머신	대	-	국고지원장비
버터플라이 머신	대	-	국고지원장비
암켈 머신	대	-	국고지원장비
벨트 맛사지기	대	-	자체구매장비
아령 및 아령정리대	세트	-	자체구매장비
프레스 머신	대	-	국고지원장비
트위스터 머신	대	-	국고지원장비
토탈 힙 머신	대	-	국고지원장비
체성분 분석기	대	내장지방 측정기능	국고지원장비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대	-	자체구매장비

5.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기타 사업부문

장 비 명	단 위	규 격 및 사 양	국고지원여부
보건사업용 차량	대	-	국고지원장비
방문진료세트	대	-	자체구매장비
TV	대	보건교육용	자체구매장비
프로젝터 및 스크린	대	보건교육용	자체구매장비
삼색 식별기	대	-	자체구매장비
색맹 검사표	개	-	자체구매장비
시야계	대	-	자체구매장비
교육용 모형	대	건강증진사업	자체구매장비
일산화탄소 측정기	대	건강증진사업	자체구매장비
폐활량측정기	대	건강증진사업	자체구매장비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등)	대	방문보건사업	자체구매장비
약품보관용 냉장고	대	200~350L	국고지원장비
조제용 정제분쇄기(Milling machine)	대	-	국고지원장비

III. 선정대상 사업추진 절차

제1장 | 시설 분야 사업추진 절차

1 세부관리개요

1) 설계도서의 작성 및 심의

-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구는 앞서 제출한 도시보건지소사업 신청서와 부합하는 건축설계도서 작성
- 원칙적으로 건축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보건의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의 심의를 얻은 후 사업 진행
- 심의요구시에는 해당되는 제출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심의 신청
- 사업지원단에서 제시한 심의의견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사업주체는 보건기관에 설치하는 주요 보건의료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주요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축설계 시 이러한 정보를 설계자에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장비와 건축이 상호연계 될 수 있어야 함
- **건물을 매입·분양한 경우 개보수에 대한 기본설계심의를 받아야 함**

2 주요 일정별 업무내용

내 용	사업내용 소요기간(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계 준비	■												
기본설계안 작성(시·구)	■	■											
기본설계안 검토(1차 심의) 및 보완		■	■										
실시설계도서 작성(시·구)			■	■									
실시설계안 검토(2차 심의) 및 보완				■	■								
시설공사착공보고(시·구)					■	■							
착공(시·구)						■							
주요공정별 공사진행사항 점검						■	■	■	■	■	■	■	■
시설공사완료보고												■	

1) 기본설계안 검토 수정·보완

- 사업대상 보건소는 기본설계가 완성되면 1차 기본설계심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기본설계심의신청서 양식 하단 참조) 및 설계기본도서(설계 설명서, 설계개요, 배치도, 각종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도면은 A3 size 평철 백상지 1부)를 사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음(시·구)
 - ※ 건물 분양·매입의 경우 개보수에 대한 기본설계심의를 받아야 함
- 계획안의 적절성을 검토 받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함(시·구)
- 다시 제출한 계획안에 미비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선 사업대상 시·구에서는 실시설계 등의 추후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
 - ※ **중축, 개보수의 경우 1차 기본설계심의만 실시(2차 실시설계심의 폐지)**

2) 실시설계안 검토(2차 심의) 및 수정·보완

- 실시설계를 마친 보건소는 2차 기본설계심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실시설계심의신청서 양식 하단 참조)와 실시설계도서(설계설명서, 건축관련 설계도서, 설비관련 설계도서, 내역서 등 공사용도면 일체, 도면은 A3 size 평철 백상지 1부)를 사업지원단에 제출하여 2차 심의를 받음(시·구)
- 설계도서상 미흡한 사항은 공사 입찰 전에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사입찰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시·구)
- 이에 따른 설계도면은 시설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정·보완된 도면을 사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

- 2차 심의 후에 설계에 대한 관련기관의 허가 및 협의를 진행함
- 보건기관의 로고 및 사인시스템(CI)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 ※ 건물 입간판 및 내부표찰 등, 시설공사완료보고서 사진자료 제출

3)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제출

- 공사가 선정(공사입찰)이 완료되면 건물개요, 공사범위, 예산, 사업추진 현황, 일정 등에 대한 시설공사착공보고서를 사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사업을 진행(시·구)
 - ※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건축신고에 준하는 행정절차가 수반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거나 주요 구조부가 3개 부분 이상을 철거, 수선하는 경우는 개축이 되므로 건축허가가 필요함

4) 주요공정별 공사진행사항 점검

가. 신·증축

- 공사기간 중에는 시·구의 건축직 공무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감독은 물론 건축주의 대행자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함(시·구)
- 건축직 공무원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공정별 관련 사진을 촬영·첨부하여야 함(시·구)

나. 개보수

- 공사기간 중에는 시·구의 건축직 공무원이 공사현장을 지도·감독하며, 건축주의 대행자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함(시·구)
- 건축직 공무원은 방수 및 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은 주요 공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공정별 관련 사진을 촬영·첨부하여야 함(시·구)

5)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가 완료되면 CD제출(설계도서 PDF변환파일, 준공사진 파일), 도서 제출(시설공사완료보고서, 준공사진 출력본 1부, 완공도면 중 건축도면(A3반책), 감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시설공사 완료보고서를 사업지원단에 제출함(시·구)
- 시설공사완료보고서는 공사가 완료(개소식)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절차

1) 설계심의(기본설계심의)절차

- 도시보건지소사업 지침에서 제시한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의 기능 및 면적 규모에 적합한 신청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설계도서 작성
- 시·구는 건축(설계)의 구체적 심의요구안(기본설계에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요구)을 작성하여 사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 공문은 사업지원단에 발송

- 사업지원단은 심의결과를 각 시·구에 발송
- 각 시·구에서는 접수 및 심의결과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지원단은 접수 및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단, 시·도는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 등을 시·구가 시·도를 경유하여 사업지원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결과를 사업지원단은 시·도에, 시·도는 시·구에 각각 통보함
- 시·구는 심의에 통과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을 진행하고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지원단에 재심의를 요청

2) 시공부문 기술지원절차

가. 공사 진행사항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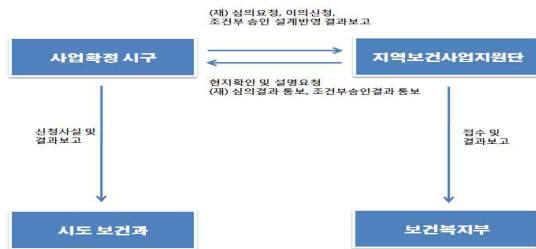
- 사업지원단은 국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를 통하여 기승인 된 보건기관의 공사진행사항 점검을 보건복지부를 대신하여 수행 가능
- 점검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공무원의 설명 또는 현지 확인 병행
- 승인된 설계도의 변경, 대지의 변경, 기능구조상의 변경 등 시공 중에 발생한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지원단의 사전심의(설계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얻은 후 시행
- 시·구는 공사기간 중에 건축직 공무원을 통하여 공사감독 및 건축주의 역할 대행
- 건축직 공무원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정별 관련사진을 촬영하여 사업지원단의 제출요구 시 활용

나. 시공부문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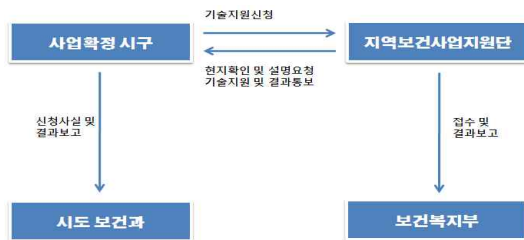
- 시공기술지원 절차는 설계심의절차와 대동소이함
- 시공시에는 반드시 보건의료장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특히 보건의료장비의 시설조건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시공기술지원은 공사의 주요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구의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거 시행 가능

4 사업절차 흐름도

1) 건축설계심의 절차



2) 시공부문 기술지원 절차



제2장 | 보건의료장비 분야 사업추진 절차

1 장비 구매

- 사업의 제반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장비 구매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원단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보건의료 장비의 검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보건사업차량은 조달청에 선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차량 구매
 - 장애인차량은 25인승(장애인차량으로 개조전) 이하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특정사양을 구비한 차량 구매
- 장비를 구입한 시·구는 장비의 검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사업 지원단에 요청
 - 필요한 경우 문서로 요구

2 A/S 등 기타 사항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시 계약서에 명기
 - 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3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 장비에 대하여 구매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 입찰차액에 따른 추가 장비의 구입 시에는 이를 포함
-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시에는 구입한 장비의 계약서, 사양, 카탈로그, A/S 보증보험증권 등 A/S 관련 서류 일체 사본 첨부
 - 장비의 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현지조사 등 실시 예정

제3장 | 사업 분야 추진 절차

1 사업변경 등

- 당초 승인된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에서 **관할지역, 설치위치, 사업인력(정규직에 한함), 조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보건지소 사업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9> 변경승인기준

분야	내용	변경승인기준
시설	지원 유형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신축, 이전신축, 증축, 개보수, 분양·매입의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외, 승인불가
	대지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매입·분양 건물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매입·분양 건물이 변경되는 경우
	면적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면적보다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복합 건물	▪ 계획서 제출 당시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기타	▪ 지역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
장비	장비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장비를 타 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조직 등	인력 및 조직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정규직 인력 수 및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역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관할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 착수 보고

- 신(중)축, 개보수가 완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착수 15일 전까지 도시보건지소 사업착수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3 사업 수행 실적 제출

-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서의 사업 수행 실적(연도별, 반기별)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4 자연사유보고서 제출

- 분기별 정상추진 일정에 지연되고 있는 경우 **자연사유보고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집중관리기관 선정기준 >

분기	집중 관리기관 선정 기준	관리 방안
1~3월	지방비 및 부지 미확보 기관	- 미확보 사유 파악 - 기술지원
4~6월	기본설계심의 미신청 기관	- 지연 사유 파악 - 일부 현지방문
7~9월	장비·차량등 구매완료보고서 미제출 기관	- 지연 사유 파악 - 일부 현지방문
10~12월	착공보고서 미제출 기관	- 지연 사유 파악 - 일부 현지방문

IV. 부 록

제1장 | 건축설계 지침

1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예시)

2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

3 보건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대부분)

1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예시)

■ 핵심사업

실 명	면적(m ²)			비 고
	실수	단위면적(m ²)	면적계(m ²)	
가. 접수공간				
계			97.92	
1) 접수/안내	1	17.82	17.82	3.3x5.4 기준
2) 대기공간	1	43.56	43.56	6.6x6.6 기준
3) 화장실	2	15.84	31.68	3.3x4.8 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1	4.86	4.86	18x27 기준, 남녀구분은 지역 조례에 따름
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계			330.0	
1)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공간	1	213.27	213.27	종합상담실, 사례관리실, 건강증진실 등 포함
2) 보건교육실	1	90.00	90.00	50인 동시수용, 다목적실로 활용
3) 소회의실	1	17.82	17.82	3.3x5.4 기준
4) 창고	1	8.91	8.91	2.7x3.3 기준, 물품보관 등
다. 맞춤형행동관리사업				
계			35.64	
1) 상담실(보건사업실)	2	17.82	35.64	3.3x5.4 기준
라. 재활보건사업				
계			115.50	
1) 운동치료실	1	43.56	43.56	6.6x6.6 기준
2) 온열치료실	1	36.30	36.30	5병상 설치, 병상당 7.26㎡ 적용
3) 작업치료실	1	21.78	21.78	3.3x6.6 기준
4) 창고	1	13.86	13.86	3.3x4.2 기준
마. 기타				
계			10.80	
1) 전산실	1	10.80	10.80	3.3x3.3 기준, 통신실
순면적 계			589.86	
공유면적비			1.40	기계실, 전기실, 복도 등
총면적			825	

■ 선택사업

* 선택사업에 필요한 면적 등을 핵심사업을 참조하여 작성

2 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

2.1 건축계획의 목표

- 도시보건지소의 건립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음

1) 기능적 합목적성

- 도시보건지소가 수행할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제 아래 발생빈도가 낮거나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료기기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또한 사용가능한 재원이 한정된 경우에는 기능 수행상 필요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효율성

- 도시보건지소의 내부배치는 수용기능간의 기능적 상관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근무자 및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움직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각종 설비 역시 건물 내 설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동일설비가 요구되는 기능들은 서로 인접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함

3) 융통성

-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보건의료의 중요도가 증가되고 지역주민들의 질병양상 변화 등에 따라 도시보건지소에서 수행할 보건사업의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역시 다양화 및 세분화될 것임
- 따라서 장래의 변화 및 증축의 필요성이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여유대지를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건물형태 및 내부설비 등이 계획되어야 함

4) 적합한 보건사업 환경 제공

-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동시에 쾌적한 내·외부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도시보건지소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상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건물의 마감재료, 색채, 가구의 종류, 조명등이 주민들의 기대수준 향상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야 함

5) 경제성

- 건물의 건립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특히 초기투자비의 절감만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약하거나 잦은 고장이 우려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재료 및 설비방식을 채택하여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수준에 의해 유지·관리될 수 없는 건물이 건립되어서는 안됨

2.2 일반설계지침

1) 대지의 선정

- 대지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접근성, 크기,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적 조건의 적합성, 대지의 방위 및 방향, 지형, 건축법규 등의 규정사항, 지가 등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고려사항 중 대지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으로 대지구도 및 접근성을 들 수 있음
- 도시보건지소의 대지는 장기적인 보건사업의 확대를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를 갖는 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시보건지소의 대지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지이용방안

- 도시보건지소 대지이용계획의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가. 증축여유 대지의 확보

- 도시보건지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시향후 증축방향을 설정하고 증축방향 쪽으로 충분한 여유대지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무조건 대지의 중앙에 건물을 배치시키거나 증축이 가능한 방향 쪽으로 여유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대지경계선과 인접시켜 건물을 배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장애인용 주차장의 설치

- 자가 차량 이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주차대수 산정 시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원용 주차장은 근무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시보건지소 현관 가까이 설치될 장애인용 주차시설은 최소 2대 이상 동시주차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일반 환자용 주차공간 및 직원용 주차공간은 현관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행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 물품차량 동선의 분리

- 물품공급차 및 쓰레기 수거차 등 서비스 차량의 주차공간 및 건물로의 진입은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라. 옥외공간의 계획

- 도시보건지소의 대기공간과 면한 옥외공간은 대기공간과의 연속성을 가지며 또한 어린이 놀이장소 및 다중이 참여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제공하며 방수재료로 바닥을 마감하여야 함. 도시보건지소의 재활치료실은 옥내외 치료공간을 연계하여 계획하여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고려함

3) 형태계획

- 도시보건지소는 주민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일반 관공서가 갖는 위압감과 딱딱함에서 벗어나는 참신한 형태의 개발이 요구됨
- 또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주는 비인간적이고 인공적인 규율을 요구하는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함
- 지역의 점차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주변의 신설 건물보다 낙후되거나 진부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보다 현대적 감각의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4) 설비 및 시설수준

- 도시보건지소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및 시설수준은 초기투자비 및 시설 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것에만 한정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불필요한 기계설비에의 의존도 최소화

- 도시보건지소에는 가급적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냉방 시설은 필요시 패키지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함
- 이를 위해서는 여름철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건물의 남쪽 면에는 차양이나 광선반을 설치하여 직달 일사확득을 최소화 하면서 자연채광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 냉난방을 위한 기계설비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선정하고 지붕과 외벽에는 충분한 단열재를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임

- 환기 및 인공조명등에 소요되는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건물 내 모든 공간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암실이 많이 발생하는 밀집형태는 배제하며 대지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러한 형태의 채택이 요구될 경우 중정(inner court)을 도입하도록 함
-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는 E.H.P(Electric Hit Pump) 또는 G.H.P(Gas Hit Pump)시스템은 냉·난방 겸용 시스템으로서 도시보건지소에 적용 시 유지·관리 측면에서 용이한 장점이 있음

나. 운영비의 절감

- 도시보건지소의 사용되는 각종 재료 등은 단순히 투자비 절감차원이 아닌 건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내구성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어야 함

다. 유지관리의 용이성

- 도시보건지소에 설치되는 설비 및 시설은 이의 운영 및 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스템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인이 쉽게 유지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각종 배관 및 배선 등이 벽 또는 천정 속에 매립되어 설치되면 고장수리 시 매립부분의 철거 등이 필요하므로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노출설치하거나 점검구를 충분히 계획하고 또는 조립이 가능한 구조 속에 설치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함

라. 내부변경의 융통성 확보

- 도시보건지소의 칸막이 등은 추후 사용 시 변경이 용이하도록 되도록 이동이 가능한 경량칸막이 등 가변벽체를 사용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천정마감재도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함
- 그리고 설비의 개보수 및 증설 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비덕트와 지하에 피트를 설치하되 사람이 서서 보행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함

5) 평면계획 시 고려사항

가. 접수창구 계획

- 접수창구는 주출입구에 인접하거나 또는 주출입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켜 도시보건지소 이용환자들의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접수창구는 개방식 카운터 형태로 계획하여 환자들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함

나. 대기공간 계획

- 대기공간은 가능한 각 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함. 1층 로비부분의 대기공간과 면하여 보도블록이 깔린 적정한 옥외공간을 배치하고 이에 면하는 창문은 창문턱을 설치하지 않고 전면창으로 계획을 고려함

다. 기타 사항

- 주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며 휠체어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공간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비만, 만성질환관리 등 사업을 수행 시 담당 근무인력의 사무공간 및 상담공간으로 활용함
- 보건교육실은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획하며 다수의 외부동선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야 함

2.3 면적계획

1)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설정 전제

-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는 도시보건지소가 수행중인 기능 및 역할과 근무인력의 종류 그리고 업무량의 크기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도시보건지소의 기능 및 역할, 근무인원수 그리고 업무량 등이 각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표준화시키기가 곤란한 점이 많음
 -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지역의 시설 현황 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였고 실제 적용 시 각 기초단체는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음
- 도시보건지소의 경우 기능 및 역할은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나누었고, 핵심사업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통합 실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이고, 선택

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라 수행함

- 근무인력은 보건지소장을 포함하여 전임인력 15인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지역별 필요사업에 간호인력 및 행정요원의 증원 가능성을 감안함
- 따라서 도시보건지소가 수행중인 기능이 공간의 크기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즉 설정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의 제공 필요성 및 각 공간별 발생가능한 행위를 고려하여 결정함

2) 면적계획

가. 도시보건지소의 표준모형(안)

① 면적산정기준

- 도시보건지소의 기본 모듈은 진찰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6.6m로 설정하였음
- 상담실, 예방접종실 등 외래진료적인 성격을 갖는 실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하였으며 3.3m × 5.4m를 기본으로 하였음
- 대기공간은 이용자 1인당 1.2㎡를 기준으로 30명의 동시대기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산정함
- 보건교육실 : 직원 정례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획하며 일인당 1.8㎡를 기준으로 최대 50명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산정함. 각종 보건교육관련 팸플렛 등을 배치할 수 있는 서가를 배치하며 필요시 2개의 실로 구획되어 사용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함
- 구강보건실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수행

하여야 함

- 운동사업실의 체력단련실은 재활치료실의 운동치료실과 겸용할 수 있음
- 세부 시설계획 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요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3 보건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부문

3.1 CI의 목적

-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친근감을 주어 대국민 친화도 고양
- 일선 보건기관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앙양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확보
- 전국적인 통일된 이미지를 제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건기관을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도모
- 시설공사완료 시점에서 CI 표준에 부합된 보건기관 입간판 등 설치

3.2 CI(Corporate Identity)의 구성

1) CI(Corporate Identity)의 정의

-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조직의 존립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조직의 미래 전략을 구축하고 수행해 가는 현대의 경영전략

2) 구성요소

- 이념 동일화(Mind Identity), 행동양식 동일화(Behavior Identity), 시각 이미지 동일화(Visual Identity) 등을 포함

3) 공공보건의료기관 CI작업

- 협의의 CI인 시각이미지 동일화(VI)를 우선 시행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체계(심벌마크, 로고타입, 기본색상 및 서체 등)와 응용체계(건물현판, 차량, 장비, 안내표지판, 서식, 약봉투 등)로 구성

4) 세부관리계획

- 시설 및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보건기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매뉴얼에 의거 자체 제작 및 부착(시·구)
- 지역에서 임의로 디자인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음

제2장 | 행정서식

1 도시보건지소 사업 관련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요약문(시설분야·신·증축)
- <별지 제1-3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요약문(시설분야·개보수)
- <별지 제1-4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요약문(시설분야·매입·분양)
- <별지 제1-5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요약문(장비분야)
- <별지 제1-6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7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착수보고서
- <별지 제1-8호 서식> 도시보건지소 사업 지연사유보고서

2 시·도 평가결과서

- <별지 제2-1호 서식> 시·도 평가결과서

3 시설 심의 신청서식

- 신·증축, 개보수 심의 신청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1차 심의)신청서
 - <별지 제3-2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별지 제3-3호 서식> 건축실시설계심의(2차 심의)신청서
 - <별지 제3-4호 서식> 건축실시설계 재심의 신청서
 - <별지 제3-5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3-6호 서식>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 <별지 제3-7호 서식> 실시설계변경심의신청서
 - <별지 제3-8호 서식> 시설공사착공보고서
 - <별지 제3-9호 서식> 시설공사완료보고서

■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심의 신청서식

- <별지 제4-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신청서
- <별지 제4-2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별지 제4-3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4-4호 서식>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 <별지 제4-5호 서식> 시설공사착공보고서
- <별지 제4-6호 서식> 시설공사완료보고서

4 보건의료장비 관련 서식

- <별지 제5-1호 서식> 구매완료보고서

1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보건소명	시 도		시 구 보건소	보건지소		
시·구청장	성명		전화번호			
보건소장	성명		전화번호			
사업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사업예산 (단위: 천원)	총사업비		구분	시설	보건의료장비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구		
_____시 도 _____시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시/도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오약문 포함) 10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CD 1부 3. 시·도 평가결과서 1부 4. 시설 분야 국고지원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 - 보건지소 인력(15인 이상) 확보 및 배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사본 1부 -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사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지확보계획서 1부 - 시 구 소유건물의 개·보수시는 관련 증빙서류 - 분양·매입시 추가 제출서류 - 분양·매입시 사용하는 층 및 면적에 대한 간략적인 설계안(건축평면) 1부 - 분양·매입한 건물에서 최소 20년 이상 운영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된 문서사본 1부 - 건물매입·분양계획서(감정평가에 의해 측정된 토지부분 금액을 제외한 건물매입·분양비, 건축물의 정 보가 기입된 건축물대장 등) 1부 - 입주시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방비 확보계획 등 제출						

< 별지 제1-2호 서식 >

도시보건의료사업 신청서 요약문(시설분야 - 신·증축)

신청기관		_____ 시 _____ 도 _____ 시 _____ 구 _____ 보건소 _____ 보건지소	
추진필요성			
지원분야			
신축 <input type="checkbox"/> , 증축 <input type="checkbox"/>			
현재 지소 운영여부			
운영 <input type="checkbox"/> ,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 의지 표명			
단체장 <input type="checkbox"/> , 지역주민 <input type="checkbox"/> , 민간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 기타 (_____) * 지자체장 협약서,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등 사업추진 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_____명
		취약인구	_____명 (시·구 총인구의 ____%)
	관할지역	총인구	_____명
		취약인구	_____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____%)
설치장소	설치위치(주소)		
	보건소와의 거리 _____ km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_____분)		
	관할구역(동 명칭)		
	계획연면적(m ²) _____ m ²		
	대지면적(m ²) _____ m ²		
	부지확보현황(시기)		
	기확보 <input type="checkbox"/> ,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확보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지확보방법			

신청기관		_____ 시 _____ 도 _____ 시 _____ 구 _____ 보건소 _____ 보건지소		
인력계획	총 배치 인력	_____명 (신규확보 _____명, 인력재배치 _____명, 기타 _____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_____명, 비정규인력 _____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_____명(총 인력의 ____%)		
	인력확보방법			
사업선정	핵심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선택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사업선정 필요성 (타당성 기술)				
예산		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필수지방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추가지방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총 사업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 보건의료장비 국고지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				
재정자립도(2011)		_____%		
추진일정		○ -		

< 별지 제1-3호 서식 >

도시보전지소 사업 신청서 요약문(시설분야 - 개보수)

신청기관		_____ 시 · 도 _____ 시 · 구 보전소 _____ 보전지소	
추진필요성			
지원분야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현재 지소 운영여부		운영 <input type="checkbox"/> ,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 의지 표명		단체장 <input type="checkbox"/> , 지역주민 <input type="checkbox"/> , 민간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 기타 (_____) * 지자체장 협약서,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등 사업추진 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오.	
인 구 현 황	시 · 구	총인구	_____ 명
		취약인구	_____ 명 (시 · 구 총인구의 ____%)
	관할 지역	총인구	_____ 명
		취약인구	_____ 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____%)
설 치 장 소	설치위치(주소)		
	보전소와의 거리 _____ km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____분)		
	관할구역(동 명칭)		
	건축연면적(㎡)/ 실사용면적(㎡)		
	대지면적(㎡)		
	건물 준공연도		
	건물구조형식		
	건물규모 / 사용층수		
	총 주차대수/실사용 주차대수 _____ 대 / _____ 대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input type="checkbox"/> ,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확보예정일: _____년 ____월 ____일)			
건물확보방법/			

신청기관		_____ 시 · 도 _____ 시 · 구 보전소 _____ 보전지소		
인 력 개 획	총 배치 인력	_____ 명 (신규확보 _____명, 인력재배치 _____명, 기타 _____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_____명, 비정규인력 _____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_____ 명(총 인력의 ____%)		
	인력확보방법			
사 업 선 정	핵심 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선택 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사업선정 필요성 (타당성 기술)				
예 산	국비 필수지방비 추가지방비 총 사업비	①+②	시설(①)	장비(②)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 보건의료장비 국고지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				
재정자립도(2011)		_____ %		
추진일정		○ -		

< 별지 제1-4호 서식 >

도시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요약문(시설분야 - 매입·분양)

신청기관		_____ 시 _____ 구 보건소 _____ 보건지소	
추진필요성			
지원분야 분양 <input type="checkbox"/> , 매입 <input type="checkbox"/>			
현재 지소 운영여부 운영 <input type="checkbox"/> ,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 의지 표명 단체장-인건비, 운영비 확보방안 <input type="checkbox"/> , 단체장-최소 20년 이상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민 <input type="checkbox"/> , 민간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 기타 (_____) * 지자체장 협약서, 주민 및 민간의료기관 등 사업추진 동의서 등이 있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_____ 명
		취약인구	_____ 명 (시·구 총인구의 ___%)
	관할지역	총인구	_____ 명
		취약인구	_____ 명 (관할지역 총인구의 ___%)
설치장소	설치위치(주소)		
	보건소와의 거리 _____ km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_____분)		
	관할구역(동 명칭)		
	건축연면적(㎡)/실사용면적(㎡) _____ ㎡ / _____ ㎡		
	대지면적(㎡) _____ ㎡		
	건물확보현황(시기) 기 확보 <input type="checkbox"/> ,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확보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건물규모/사용층수 _____ / _____		
입주되어 있는 상가종류 음식점 _____ 개 의료기관 _____ 개 유흥업소 _____ 개 사무실 _____ 개 마트·편의점 _____ 개 기타(_____) _____ 개			
건물확보방법			

신청기관		_____ 시 _____ 구 보건소 _____ 보건지소		
인력계획	총 배치 인력	_____ 명 (신규확보 _____명, 인력재배치 _____명, 기타 _____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_____명, 비정규인력 _____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_____ 명(총 인력의 ___%)		
	인력확보방법			
사업선정	핵심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선택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사업선정 필요성 (타당성 기술)				
예산		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필수지방비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추가지방비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총 사업비	_____ 천원	_____ 천원	_____ 천원
* 보건의료장비 국고지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				
재정자립도(2011)		_____ %		
추진일정		○ -		

< 별지 제1-5호 서식 >

도시보건의료 사업 신청서 요약문(장비분야)

신청기관		시	도	시	구	보건소	보건지소
요청사항		보건의료장비 <input type="checkbox"/> , 차량(보건사업차량 <input type="checkbox"/> , 장애인차량 <input type="checkbox"/>)					
시설 현 황	선정년도	_____년					
	국고지원 유형	신축 <input type="checkbox"/> , 증축 <input type="checkbox"/> ,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 분양 <input type="checkbox"/> , 매입 <input type="checkbox"/>					
	착공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준공(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건물매입·분양(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건축면적(m ²)	_____ m ²					
	대지면적(m ²)	_____ m ²					
	관할구역(동)	_____					
설치위치(주소)		_____					
사업 선 정	핵심 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_____				
	선택 사업	개수	_____개				
		명칭	_____				
인 력	총 배치 인력	_____명(신규확보 _____명, 인력재배치 _____명, 기타 _____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_____명, 비정규인력 _____명					
	핵심사업 투입 비율	_____명(총 인력의 _____%)					
	비고 (인력확보방법등)	_____					
필요장비요약 (국고지원 필요성 포함)		보건의료장비		차량			
예 산	국비	_____천원		_____천원			
	필수지방비	_____천원		_____천원			
	추가지방비	_____천원		_____천원			
	총 사업비	_____천원		_____천원			
추진경과		_____					

* 분양·매입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신·증축, 개보수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 별지 제1-6호 서식 >

도시보건의료 사업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시	도	시	구	보건소	보건지소
시·구청장	성명					전화번호	
보건소장	성명					전화번호	
사업 변경 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변경이유							
_____시도 _____시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도시보건의료 사업 변경을 승인 요청합니다. 200년 _____월 _____일 ○○○시/도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사업 변경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사업 계획서(사업신청서 양식과 동일) 1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CD 혹은 파일 3. 변경사항/이유 관련 대조표 및 증빙서류							

< 별지 제1-7호 서식 >

도시보전지소 사업 착수 보고서

보전소명	시·도		시·구 보전소		보전지소		
시·구 청장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보전소장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작성 담당자	성명		휴대폰		E-mail		
			F a x		국 비		
			지 방 비	시·도		시·구	
				총사업비			
시설현황	선정년도		년				
	국고지원 유형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매입 <input type="checkbox"/>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건물매입·분양일**		년 월 일				
	사업 개시일		년 월 일				
	건축면적(m ²)		m ²				
	대지면적(m ²)		m ²				
	관할구역(동)						
설치위치(주소)							
사업	핵심사업	개수	개				
	선택사업	개수	개				
인력	총 배치 인력		명(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명, 비정규인력 명				
	핵심사업 투입비율		명(총 인력의 %)				
추진경과							
시·도 시·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도시보전지소 사업 착수를 보고합니다. 200년 월 일 ○○○시/도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시보전지소 사업 계획서(사업신청서 양식과 동일) 2. 상기내용을 수록한 CD 혹은 파일							

* 분양·매입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신·증축, 개보수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 별지 제1-8호 서식 >

도시보전지소 사업 지연사유보고서

(작성시점 기준)

사업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년월일	내용	집행액		년월일	내용	집행예정액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2 시·도 평가결과서

< 별지 제2-1호 서식 >

시·도 평가결과서

시·도				
시·도지사	성명		전화번호	
평 가 결 과				
사구명	보건소명	점수	순위	종합의견
A 사구	A 보건소			
B 사구	B 보건소			
C 사구	C 보건소			

3 시설 심의 신청서식

1) 보건기관 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시 검토사항

가. 배치계획

- 대지의 선정 시 고려사항 : 면적, 접근성, 방향, 조망, 지질상태(성토지) 등 특수한 조건
- 배치 시 자연조건외의 고려 : 조망, 향, 강우, 미관 등 지역의 특수한 조건
- 배치
 - 건물의 위치
 - 건축물의 확장성 고려
 - 조경
 - 출입구의 위치 : 대지의 출입구 및 건축물의 주출입구
 - 주차장 : 주차대수(법정대수 및 계획대수, 지상 및 지하), 장애인용 주차장, 주차장에서 본관으로의 접근성
 - 동선체계의 적정성 : 보행자, 차량, 서비스동선
 - 옥외공간의 확보 및 적정위치 고려
 - 건물의 정면성을 고려
 - 건물 배치와 더불어 건축지반의 지질조사서를 첨부하거나 육안 확인한 지질상태(지내력)를 기술할 것

나. 평면계획

- 보건사업계획과의 부합여부
- 기능의 배치
 - 접수창구
 - 대기공간의 확보
 - 보건사업공간 및 사무공간의 구분(환자공간의 저층배치)
 - 대량동선(교육, 회의 등)의 접근성 고려
 - 부서간의 연계 및 분리
 - 수직, 수평의 명쾌한 동선처리
 - 수직동선 위치의 적정성 고려
 - 출입문(외부는 방풍실 설치, 내부는 안쪽으로 열리는 것이 원칙. 단 장애 인용 화장실은 예외)
- 세부실별 고려사항 : 면적, 설비, 위치, 환경, 자연채광
- 가구 및 장비배치계획도의 검토
 - 가구배치도면
 - 보건의료장비 설치계획서
 -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 내부 융통성의 확보(덕트, 내부 벽체의 경량칸막이 사용 등)

다. 입면계획

- 건축적인 면
 - 주변과의 조화
 - 심미성, 친근성, 상징성
 - 기능과 형태의 연관성
- 유지관리적인 면
 - 재료선택의 적절성
 - 에너지절약적인 측면(향별 입면의 차별성)

라. 단면계획

- 층고, 천장고, 설비공간의 적정성
- 계단의 단높이 및 너비적정성, 엘리베이터(랩프)의 설치
- 중축을 고려한 구조계획

마. 설비계획

- 설비계획의 적정성
 - 냉·난방설비 공급방식
 - 기계실의 면적
 - 전기 및 기계실의 확장성 및 예비용량 계획
 - 지하 PIT설계 반영 - 유지보수 고려

- 유지관리의 고려
 - 인력확보
 - 운영비의 고려

2) 보건기관 실시 설계심의(2차 심의)시 검토사항

가. 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

- 기본설계내용을 토대로 한 세부계획

나. 마감재료

- 내·외부 마감재료 계획의 적정성

다. 상세계획

- 실내마감상세, 평면상세, 외벽단면상세, 코아상세, 창호상세 계획의 적정성

라. 구조계획

- 구조시스템, 경간의 적정성의 적정성
- 구조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지반상태에 따른 건물기초방식의 적정성(MAT 기초를 지양하고 독립기초 또는 줄기초 방식채택. 단, 지하층의 일부를 MAT 기초로 하는 것은 가능함)

마. 기계설비계획

- 냉난방, 위생, 환기, 소화 설비계획의 적정성

바. 전기설비계획

- 수변전, 간선/동력, 조명/전열, 약전, LAN, 방재 계획의 적정성

사. 가구 및 의료/전산장비계획

- 가구 및 의료/전산장비와 연관된 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비계획

- 공사비 계획 및 이용의 적정성

<별지 제3-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1차 심의)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설 계 자	보건소장명		전화/FAX	
	성명		사무소명	
대지조건	주소		전화	
	위치		면적	m ²
배정사업비(공사비)	지역		지구/지목	
	국비	천원	지방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축, 개보수, 증축)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구조		지상층면적	m ²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자 대)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심의(1차 심의)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 신축의 경우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2.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예산서사본, 예산총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첨부 (예산총당은 국고지원금과 시구지방비로 하되, 시구 지방비는 필수건축공사비, 초과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나누어 작성) 4. 해당보건기관의 조직표 및 조직별 근무직원수 * 개보수 및 증축의 경우 1. 대지에 관한 서류 1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2. 자치단체의 건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실내재료마감표,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4. 변경 전, 후의 도면을 모두 첨부 5. 건물에 대한 건축사의 안전진단확인서 첨부 6. 해당보건기관의 조직표 및 조직별 근무직원수 7. 예산서사본, 예산총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첨부 (예산총당은 국고지원금과 시구지방비로 하되, 시구 지방비는 필수건축공사비, 초과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나누어 작성)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심의(2차심의)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설 계 자	보건소장명		전화/FAX		
	성명		사무소명		
대지조건	주소		전화		
	위치		면적	m ²	
배정사업비(공사비)	지역		지구/지목		
	국비	천원	지방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축, 개보수, 증축)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층면적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자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기본설계심의(1차 심의)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심의시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이전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심의(2차 심의)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건축실시설계심의(2차 심의)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m ²
	지역		지구/지목		
예정사업비 (공사비)	국비	천원	지방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비	초과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에 ○표시)	신축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층면적		m ²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자 대)	지원년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실시설계심의(2차 심의)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신청인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소유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본설계심의시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재료 마감표, 주차장평면도, 외벽단면상세도 등 건축,구조,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 공사용도면 일체), 공사비내역서(전체 집계표만 제출), 각실별면적,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보건기관에 대한 건축물의 실시설계심의는 원활한 보건관련 업무수행 및 합리적인 건축계획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4호 서식>

건축실시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m ²
	지역		지구/지목		
예정사업비 (공사비)	국비	천원	지방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비	초과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에 ○표시)	신축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층면적		m ²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자 대)	지원년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실시설계심의(2차 심의)에 대한 재심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신청인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본설계심의시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도서(설계개요,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재료 마감표, 주차장평면도, 외벽단면상세도 등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 소방 등 공사용도면 일체), 공사비내역서, 각실별면적,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보건기관에 대한 건축물의 실시설계심의는 원활한 보건관련 업무수행 및 합리적인 건축계획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7호 서식>

실시설계변경심의신청서						실시설계변경심의회수 회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상호				
	주소		전화				
공 사 감 리 자	성명		상호				
	전화		면허번호				
시 공 자	상호		주소				
	전화		건설업면허번호				
예 정 사 업 비	국비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초과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건축연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원년도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심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신청인 (인)							
<첨부서류>							
1. 설계변경과 관련이 있는 건축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마감표, 공사비내역서, 각설별면적, 가구 및 의류장비 배치도, 건축설비도 등에서 선택) 1부							
2.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설계변경심의를 보건기관의 합리적인 건축계획 및 시공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8호 서식>

시설공사착공보고서										
기 관 명				공 종 ²⁾			공 종 ²⁾			
공 사 명				계약 구분			계약 구분			
위 치				관리 번호			관리 번호	계 호		
건 물 개 요	대지면적			㎡	공 사 집 행 현 황	나 찰 율			%	
	건축면적			㎡		예정 가격			천원	
	연 면 적			㎡		계약 금액			천원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구 조 ¹⁾					착공연월일			년 월 일	
설 계 관 련 사 항	사업년도				분 야 공 사 비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기간			~		감 독 자 (건축직)	시·구			
	설 계 금 액	국 비				천원	시 공 자	상 호		
		지방비				천원		대 표		
	설 계 자	상 호					현 황	전 화		
		대 표						건설업면허번호		
	지 원 단 계 인	기 설 계				년 월 일	분 야 공 사 비	구 분		
		실 시 계				년 월 일		개 보 수		
	건 축 협 의	기 설 계				년 월 일	분 야 공 사 비	기계설비		
		실 시 계				년 월 일		전기설비		
설 계(공사) 면 적	건 축			㎡	분 야 공 사 비	토목공사비				
	개 보 수			㎡		조경공사비				
공 사 감 리 자	성 명				분 야 공 사 비	정화조공사비				
	상 호					총 공사비				
	주 소					면허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상 호			전 화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착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제출자 (인)										
첨부서류	공사계획서, 공정표 ³⁾ , 입찰관련서류 ⁴⁾ 등									

<별지 제3-9호 서식>

시설공사완료보고서				
보건기관	보건소장명		전화/FAX	
	공사명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공 사 감 리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감 독 자	시·구	직책 :	이름 :	
	보건소	직책 :	이름 :	
공 사 시 공 자	성명 또는 상호		건설업면허번호	
	주 소	(전화)		
대 지 위 치			사업년도	
착 공 일 자			사용승인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1. CD제출(설계도서 PDF변환파일, 준공사진 파일)				
2. 도서제출(시설공사완료보고서, 준공사진 출력본 1부, 완공도면 중 건축도면(A3판짜), 감리보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1차심의)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설 계 자	보건소장명		전화/FAX	
	성명		사무소명	
대지조건	주소		전화	
	위치		면적	m ²
배정사업비 (분양·매입비)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지방비 천원
				초과지방비 천원
개보수비	국비		지방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분양·매입에 따른 개보수)	건축연면적(전체)	m ²
	건물 규모(전체)	지상 층, 지하 층	개보수연면적	m ²
	개보수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 구조	
	층주차대수/사용가능대수	대/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심의(1차 심의)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1. 대지에 관한 서류 1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2. 건축물에 관한 서류 1부(건축물 대장)				
3. 건물 매입·분양 매매계약서류 사본 1부				
4.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실내재료마감표,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등 각 1부				
5. 변경 전, 후의 도면을 모두 첨부(개보수되는 층)				
6. 해당보건기관의 조직표 및 조직별 근무직원수				
7. 예산서사본, 예산총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첨부(매입·분양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개보수비용에 대한 지방비 확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심의(2차심의)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2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m ²
	지역		지구/지목	
배 정 사 업 비 (분양·매입비)	국비	친원	지방비	친원
			초과지방비	친원
개보수비	국비		지방비	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분양·매입에 따른 개보수)	건축연면적(전체)	m ²
	건물 규모(전체)	지상 층, 지하 층	개보수연면적	m ²
	개보수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 구조	
	층주재배수사용가능대수	대/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기본설계심의(1차 심의)에 대한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에 대한 서류 1부, (최초 심의시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류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이전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심의(2차 심의)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관련심의에 ○표시)		① 기본설계심의(1차심의) _____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위의 같이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2. 이의신청사유서 1부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이의신청 관련사항은 기 통보된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심의와 합리적인 보건기관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4호 서식>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기본설계변경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배정사업비 (분양·매입비)	국비	친원	지방비	필수지방비	천원	
			초과지방비	천원		
개보수비	국비		지방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분양·매입에 따른 개보수)	건축연면적(전체)		㎡	
	건물 규모(전체)	지상 층, 지하 층	개보수연면적		㎡	
	개보수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 구조			
	총주채대수/시용가능대수	대/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역보전사업지원단장 귀하 신청인 (인)						
<첨부서류> 1.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 변경전, 변경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2. 기본설계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토지, 건축물, 예산, 조직도 등) 3. 설계변경사유서 (건축주,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실시설계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5호 서식>

시설공사착공보고서										
기 관 명				공 사 집 행 현 황	공 종 ²⁾					
공 사 명					계약 구분					
위 치					관리 번호	계 호				
건 물 개 요	대지면적	㎡			낙 차율			%		
	건축면적	㎡			예정 가격			천원		
	연 면 적	㎡			계약 금액			천원		
구 조 ¹⁾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구 조				착공연월일	년 월 일				
설 계 관 련 사 항	사업년도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기간	~			감 독 자 (건축직)	시·구 보건소				
	설 계 금 액	국 비	천원		시 공 자	상 호				
		지방비	천원			대 표				
	설 계 자	상 호				아 공 사 비	전 화			
		대 표			건설업면허번호					
	지 원 단 계 인	기 본 계	년 월 일		구 분		금 액			
		건 축 협 의	년 월 일		건 축	천원				
	설 계(공사) 면적	개보수	㎡		기계설비	천원				
			기 본 계	년 월 일		전기설비	천원			
공사감리자	성 명			토목공사비	천원					
	상 호			조경공사비	천원					
	주 소			정화조공사비	천원					
				면허번호						
				등록번호						
				전 화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착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역보전사업지원단장 귀하 제출자 (인)										
첨부서류	공사계획서, 공정표 ³⁾ , 입찰관련서류 ⁴⁾ 등									

<별지 제4-6호 서식>

시설공사완료보고서				
보건기관	보건소장명		전화/FAX	
	공사명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공 사 감 리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감 독 자	시·구	직책 : 이름 :		
	보건소	직책 : 이름 :		
공 사 시 공 자	성명 또는 상호		건설업면허번호	
	주 소	(전화)		
대 지 위 치		사업년도		
착 공 일 자		사용승인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완료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장 귀하				
<첨부서류>				
1. CD제출(설계도서 PDF변환파일, 준공사진 파일)				
2. 도서제출(시설공사완료보고서, 준공사진 출력본 1부, 완공도면 중 건축도면(A3반곽), 감리보고서				

4 보건의료장비 관련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구매완료보고서

<참고>

- 1) 승인된 장비에 대하여 구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입찰차액에 따른 추가장비의 구입시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함
- 2) 구매완료보고서 제출시에는 ① 구입한 장비의 계약서, ② 사양, ③ A/S 보증보험증권 등 A/S관련서류일체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장비명	승인 수량	승인모델/ 회사명	구매 수량	구매모델/ 회사명	승인가격/ 실제구매가격	구매변경 사유	구매에 따른 문제점
구분	승인품목 (총수량/금액)							
보건의료장비								
보건사업용차량								
구분	추가품목 (총수량/금액)							
보건의료장비								
보건사업용차량								

* 구매변경사유란에는 사업지원단에서 승인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수량변경, 모델변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구매에 따른 문제점란에는 구매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가격의 불일치, 기본사양의 미비, A/S 계약시의 마찰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제점 발생시 구매완료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사업 지원단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제3장 | 도시보건지소사업 관련 연락처

-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주소
 -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번지 4층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보건사업팀

○ 연락처

소속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E-mail
보건복지부	주수영	사무관	담당 사무관	02-2023-7485	soochoo@korea.kr
	신재귀	주무관	담당자	02-2023-7492	happyjk@korea.kr
지역보건사업 지원단	이화경	실장	업무 총괄	02-3781-3557	hkledr@khealth.or.kr
	이수진	팀장	업무 총괄 조정	02-3781-3565	sjlee@khealth.or.kr
	김현주	연구원	도시보건지소사업 총괄 담당	02-3781-3559	hkim@khealth.or.kr
	박세진	연구원	도시보건지소사업 시설 부문 담당	02-3781-3567	sjpark@khealth.or.kr
	장효범	연구원	도시보건지소사업 장비 및 차량 담당	02-3781-3577	janghyobum@khealth.or.kr

제4장 | 지침서 및 설명회자료 등 다운로드 방법

